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625-01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발전과제 및 활성화 전략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발전과제 및 활성화 전략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14년 5월 ~ 2014년 9월

연구책임자: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연구참여자: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김익조 경상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매니저

이도경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조교

2014년 9월

한국농업경제학회장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2
3. 연구의 내용 ····· 3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 5

제2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개념 및 실태

1. 개념 및 필요성 ····· 7
2. 주요 산업의 실태 분석 ····· 11

제3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관련 정책

1. 국내 정책 ····· 42
2. 주요국 정책 ····· 61

제4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제약 요인 분석

1. 법·제도적 제약 요인 ····· 73
2. 경영·마케팅 제약 요인 ····· 94

제5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 103
2. 부문별 세부 전략 ····· 106

부록 1.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 정의의 세부 기준 ····· 131
부록 2. 맥도웰 팜스 살사(McDowell Farms Salsa) 사례 ····· 138
부록 3. 지자체 자체 조례안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143
부록 4. 소규모 HACCP 선행 요건 ····· 146
부록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8
부록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시 ····· 184
부록 7. 국토법 및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 ····· 187
부록 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링 사례 ····· 192
부록 9.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개요 ····· 195

참고 문헌 ····· 198

표 차 례

제2장

표 2-1. 장류 산업의 성장 추이 ····· 11
표 2-2. 장류의 품목별 출하 현황 (2012) ····· 12
표 2-3. 장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 13
표 2-4. 장류 업체 개황 ····· 14
표 2-5. 절임류 산업의 성장 추이 ····· 19
표 2-6. 절임류의 품목별 출하현황 (2012) ····· 20
표 2-7. 절임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 20
표 2-8. 절임류 업체 개황 ····· 22
표 2-9. 음료류 산업의 성장 추이 ····· 26
표 2-10. 음료류의 품목별 출하 현황 (2012) ····· 27
표 2-11. 음료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 28
표 2-12. 음료류 업체 개황 ····· 29
표 2-13. 떡류 산업의 성장 추이 ····· 33
표 2-14.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 33
표 2-15. 떡류 업체 개황 ····· 34
표 2-16. 한과류 산업의 성장 추이 ····· 37
표 2-17. 한과류 업체 개황 ····· 38

제3장

표 3-1.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금융지원 ····· 45
표 3-2.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컨설팅 지원 ····· 46

표 3-3.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교육 지원 ····· 47
표 3-4.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수출 지원 ····· 48
표 3-5.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 49
표 3-6.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출원·인증 및 평가 지원 ····· 50
표 3-7.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사업 및 시설 지원 ····· 51
표 3-8.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 52
표 3-9.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선정 실적 ····· 58
표 3-1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의 지역별 분포 ····· 59
표 3-11. 일본의 영업 허가 필요 업종 ····· 70

제4장

표 4-1. 단순 가공 농·임산물 가공식품 여부 예시 ····· 75
표 4-2. 농산물 가공 관련 지자체 조례 ····· 79
표 4-3. 「국토법」(용도지역)에 따른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가능 여부 ····· 92

제5장

표 5-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안) 검토 내용 ····· 110
표 5-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안) ····· 121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 4

제2장

그림 2-1. 쌀과 쌀 가공식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사례 ····· 10
그림 2-2. 장류업체의 장독대 공간 ····· 15
그림 2-3. 장류업체 제조장 ····· 16
그림 2-4. 절임류 숙성시설 ····· 23
그림 2-5. 염전 체험시설 ····· 24
그림 2-6. 음료류 제조 시설 ····· 30
그림 2-7. 떡류 제조 시설 ····· 35
그림 2-8. 한과류 제조 시설 ····· 39

제3장

그림 3-1. 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10kg 기준) ····· 55
그림 3-2.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내부 설비 ····· 57
그림 3-3. 상업용 키친 사례 ····· 62
그림 3-4. 켄터키 주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농가(McDowell Farms Salsa) 홈페이지 ····· 68

제4장

그림 4-1. 농·임산물 가공품의 가공식품 판단 기준 ····· 74
그림 4-2. 산지 저온 저장고 ····· 95
그림 4-3. 파레트 랩핑기와 핸드 지게차 ····· 98
그림 4-4. 지역 축제 판매장 ····· 100

제5장

그림 5-1.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로드 맵 ····· 104
그림 5-2.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기본 방향 ····· 10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6차 산업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차 생산업인 농림축산업에 2차 식품가공산업 등을 결합시켜 농가 수취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1] 대표적인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은 농업 6차 산업화의 표본이 되는 정책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 6차 산업화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일본(今村奈良臣 동경대 명예교수)에서 주창되었는데, 농업이 1차 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산업(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규제들이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기준과 까다로운 규제들이 주요 문제로 부각됨. 이와 같은 업계의 현실과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괴리는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최근 횡행하고 있는 식파라치들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식품가공이 중심을 이루는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현황과 관련 제도·정책을 분석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다음,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함.

- 특히, 산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발전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제시에 주력

2. 선행 연구 검토

○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및 업체의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 제시에 집중한 연구(박승용, 성방욱(2007), 최태동 외(2008) 등)와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류충호 외(2009), 정은미(2010) 등)로 분류될 수 있음.

○ 먼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및 업체관련 연구 중, 박승용, 성방욱(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산지가공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

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및 마케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최태동 외(2008)에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관련 제도 분석 연구 중, 류충호 외(2009)의 연구에서는 산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체의 창업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을 조사한 다음, 관련 법령 등의 개선 방안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은미(2010)의 연구에서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의 개념을 제시하고, 농가들이 소규모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장류, 떡류, 과즙류에 대한 소규모 식품가공 실태를 분석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및 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안 제시에는 한계를 보임.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짐. 우선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현황과 의의를 분석한 다음,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법적·제도적 실태를 정책적 시각으로 논의함. 이어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애로 사항과 저해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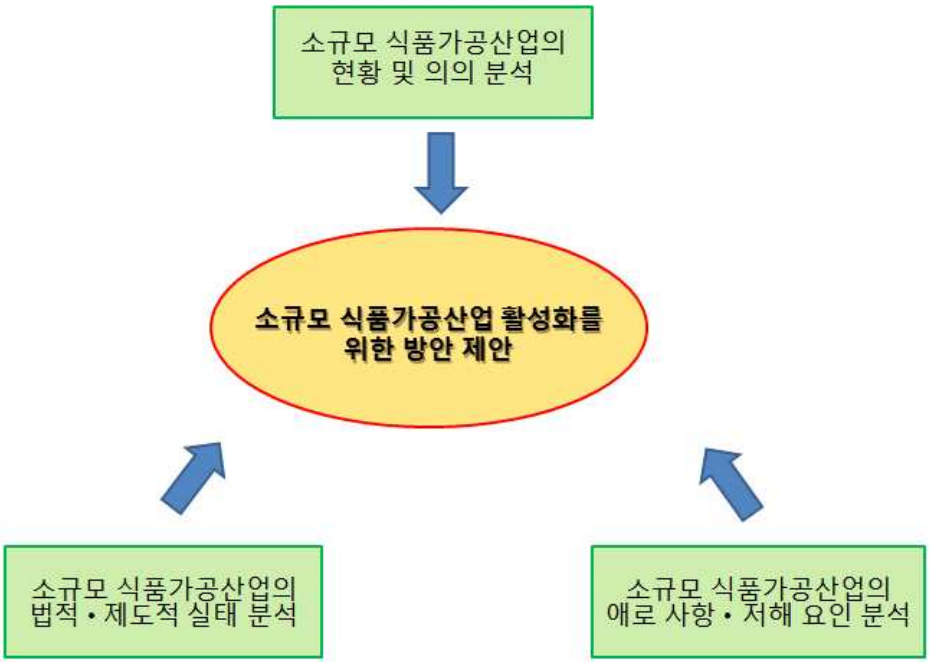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먼저 제 2장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현황과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실태 분석을 주요 품목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함.

○ 제 3장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고, 주요국 사례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제약 요인과 경영·마케팅 제약 요인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노력함.

○ 제 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함.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4.1.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산업과 관련 시장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함.

○ 다만, 선진국 사례 분석을 연구 범위에 포함함.

4.2. 분석 방법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관련 연구 논문, 보고서, 기타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 출장 조사

-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및 심층면담 조사 (In-depth interview) 실시
- 특히, 업체 실태 조사를 장류, 절임류, 음료류, 떡류, 한과류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계 현장 분석을 시도

○ 전문가 자문회의(FGI: Focus group interview) 개최

-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

제 2 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개념 및 실태

1. 개념 및 필요성

1.1.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정의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개념은 류충호 외(2009), 정은미(2010) 등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류충호 외(2009)에서는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의 정의로 “농촌에서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연접한 토지에 위치한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제시함.[2]

2 류충호 외(2009)의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의 정의에 제시된, 지역 및 위치 기준, 경영주체 기준, 원료 범위 기준, 시설 범위 및 규모 기준, 종업원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 정은미(2010)의 연구에서는 류충호 외(2009)의 연구에서 원료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여, “농촌에서 농업인이 생산자를 확인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체”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로 정의함.

- 정은미(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매출액 기준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액 기준을 일시 초과하자마자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

○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남양주시, 원주시, 단양군, 공주시, 구례군, 장성군, 진주시, 봉화군)도 조례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건으로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를 사용하고, 33㎡(10평) ~ 66㎡(20평)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보유하며,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1억 원 ~ 2억 원 미만인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3]

- 남양주시는 작업장 규모를 33㎡(10평) 이내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66㎡(20평) 이내로 제한
- 공주시, 장성군, 봉화군은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1억 원 미만으로 제한
- 장성군, 봉화군은 기존 기준에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의 조건 추가

○ 참고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HACCP의 대상 업체 기준은 연매출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3 여기에 추가하여 무주군과 서천군은 식품(관련)영업 (공통)시설 기준특례규칙을 제정하였고, 강진군과 남해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미만으로 제시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소규모 HACCP 선정 대상이 됨.

○ 이상의 내용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인(단체)이 생산자가 확인된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 에서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포함된 산업”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으로 정의함.

- 식품제조시설의 면적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굳이 해당 기준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종업원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4]

1.2. 필요성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은 최근 주요 농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 6차산업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써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차 농업과 2차 식품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산업이 서로 융·복합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부가가치 증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쌀 가공품을 들 수 있는데, 쌀을 가공한 식품들의 시장 가격이 쌀의 5 ~ 10배에 달하여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 가능

4 소규모 HACCP 선정 기준도 참고.

그림 2-1. 쌀과 쌀 가공식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사례

2천원/kg

1만원

1만 3천원

2만 1천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식품가공산업 등의 타 산업에 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매우 많은 실정임.

- 대표적으로 농업인이 기존 식품가공업체를 설립·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다양한 규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중
- 특히,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식파라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농업인 운영 식품가공업체들이 위축을 받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농업인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로 완화되고 농산물가공 창업관련 지원사업이 이루어 질 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은 농업인이 쉽게 식품가공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우리나라 식품가공 상품들이 농업인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풍부한 식품가공품 아이템(item)들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어 농업과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산업의 실태 분석

2.1. 장류

2.1.1. 산업 개황

○ 우리나라 장류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2008년 8,900억 원에서 2012년 1조 357억 원으로 16.4%의 증가율을 보임. 수출 실적은 같은 기간 동안 물량과 금액이 각각 25.9%와 24.1%의 증가율을 보여 내수시장에 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출하량은 2008년 ~ 2012년의 기간 동안 10.9%의 감소를 보여 장류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

표 2-1. 장류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출하량	558,592	553,517	497,725	-10.9
출하액	890,003	911,446	1,035,663	16.4
수출량	19,194	20,630	24,161	25.9
수출액	30,293	29,658	37,586	24.1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장류의 세부 품목별 시장 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고추장과 간장이 각각 출하액의 30.9%와 29.8%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고, 된장이 16.4%의 비중을 차지함. 수출 실적도 이와 유사한데, 금액 기준으로 고추장과 간장이 각각 47.8%와 23.1%의 높은 비중을 보였고, 된장은 14.2%의 비중을 가짐.

표 2-2. 장류의 품목별 출하 현황 (2012)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

구분	출하량	출하액	수출량	수출액
계	497,725 (100.0)	1,035,663 (100.0)	24,161 (100.0)	37,586 (100.0)
메주	3,306 (0.7)	19,573 (1.9)	2 (0.0)	10 (0.0)
한식간장	3,100 (0.6)	15,284 (1.5)	154 (0.6)	257 (0.7)
양조간장	43,354 (8.7)	111,083 (10.7)	1,610 (6.7)	3,226 (8.6)
산분해간장	50,801 (10.2)	33,835 (3.3)	160 (0.7)	89 (0.2)
효소분해간장	38 (0.0)	302 (0.0)	- (0.0)	- (0.0)
혼합간장	96,982 (19.5)	148,233 (14.3)	6,083 (25.2)	5,116 (13.6)
한식된장	3,300 (0.7)	25,451 (2.5)	52 (0.2)	241 (0.6)
된장	81,415 (16.4)	142,302 (13.7)	3,833 (15.9)	4,933 (13.1)
조미된장	893 (0.2)	2,514 (0.2)	129 (0.5)	169 (0.4)
고추장	127,886 (25.7)	319,210 (30.8)	9,298 (38.5)	17,937 (47.7)
조미고추장	84 (0.0)	1,144 (0.1)	8 (0.0)	23 (0.1)
춘장	17,544 (3.5)	24,416 (2.4)	701 (2.9)	609 (1.6)
청국장	7,878 (1.6)	32,673 (3.2)	61 (0.3)	156 (0.4)
혼합장	59,575 (12.0)	151,776 (14.7)	2,069 (8.6)	4,813 (12.8)
기타장류	1,570 (0.3)	7,867 (0.8)	0 (0.0)	7 (0.0)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2.

○ 장류 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기준과 유사한 10인 미만의 업체 비중이 전체의 88.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별 추이를 보면, 4명 이하의 영세업체와 100명 이상의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장류 산업 구조의 양극화를 반영함.

표 2-3. 장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1-4명	63.2	66.7	67.6	7.0
5-9명	22.1	20.5	20.8	-5.9
10-19명	9.3	7.0	5.8	-37.6
20-49명	2.7	3.5	3.1	14.8
50-99명	1.7	1.3	1.5	-11.8
100명이상	1.0	1.0	1.2	20.0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각 년도.

2.1.2. 업체 실태 분석

가. 업체 개황

○ 장류 업체의 실태 분석을 위해 업체 3곳을 방문 조사하였음. 기본적인 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시 종업원 수는 1 ~ 2명으로 비슷했지만 사업 기간, 작업장 규모, 매출액 등은 업체 간 차이가 컸음. 주력 품목은 전통 장류인데, 국산 콩을 사용하고 전통 장독대를 이용하여 장류를 생산하고 있었음.

- 주 원료인 콩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되, 부족분은 인근 지역 생산자에게 구매를 하여 사용

○ 생산한 상품의 판매는 주로 자체 회원이나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협이나 지역 행사나 기관 선물용으로도 판매가 다수 진행됨.

- 직거래는 개인 간 입소문을 통한 전화 주문 등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온라인(on-line) 거래가 병행되고 있으나, 업체마다 비중의 차이 발생

표 2-4. 장류 업체 개황

항목		업체 개황 (2013년 기준)		
		A 업체	B 업체	C 업체
기본 현황	사업 기간	5년	14년	2년
	소재지	전북 장수	충남 공주	경남 통영
	상시 종업원 수	2명	1명	2명
	작업장 규모	66㎡ (20평)	99㎡ (30평)	39.6㎡ (12평)
	매출액	0.3억 원	4.3억 원	0.2억 원
	공장 가동률	50%	50%	20%
	인증 관련	해당 없음	HACCP 준비 중	해당 없음
생산 현황	주력 품목	전통 장류	전통 장류	전통 장류
	주 원료	콩 (국산)	콩 (국산)	콩 (국산)
유통 경로	주 경로	직거래	자체 회원 판매	개인 직거래
	기타 경로	지역 명품관, 지역 축제, 행사 부스 판매 등	생협 공급	기관 선물용으로 공급

나. 시설·위생 관련 애로 사항

○ 장류 제조업체의 식품 가공시설은 크게 장독 등의 숙성공간과 장류 생산 및 포장 공간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한데, 장독을 두는 공간을 작업장에 포함시킬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장독대는 저장시설로 보아 생산시설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그림 2-2. 장류업체의 장독대 공간

○ 장류 제조업체의 장류 생산 필요시설은 단순하고, 위생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장류 생산의 특성 상 소규모 HACCP 인증[5]을 받기 위한 설비 개선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장독대가 필요 없는 청국장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일부 업체들이 소규모 HACCP 인증을 추진하였으나, 작업공간 외 위생 전실, 공간구분, 천정, 벽면, 바닥면과 위생설비(세척, 소독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추가 비용이 늘어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발생

5 장류에 대한 HACCP 의무화 기한은 아직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림 2-3. 장류업체 제조장

○ 추가적으로 위생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는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의 비용 부담과 세부 내용에 대한 사업자 및 위생담당자의 혼선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초기 작업장 신축과정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는 사전에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하여 입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다만, 사업 중 증·개축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정화조 용량 보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었음.

○ 오폐수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장류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물의 사용 용도가 콩 세척, 메주 세척, 기타 제조 기구 세척 등으로 그 양이 하루 20톤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행정 일선에서는 여전히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사례가 있어 폐수배출시설(별표)의 법령개정 내용에 대한 전파가 필요함.

○ 인증 또는 상품 표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상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표시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음.

- 특히, 식품 표시사항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이를 일일이 모두 확인하고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식약처나 시·군 담당 과에서 홍보 및 계도를 할 필요성 제기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강의 수강 등을 하고 있었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세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구체적으로는 식품 제조 공정이나 위생 관련 실무 사항(위생 기준 위반 및 표시 위반 사례 등 포함), 경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마케팅, 회계, 세법, 근로관계법 등), 우수 업체 견학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
- 교육과 함께 식품가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도 다수 제기

다. 경영·마케팅 관련 애로 사항

○ 장류 생산을 위한 콩 등의 주요 원료는 대부분 자가 생산분과 마을 또는 인근 지역 농가 구매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량 구매 시에는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원료 확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업체 경영에 관한 애로 사항으로는 세무,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영주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뺏기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개선을 위한 R&D에는 소홀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 세무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세무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세

금 환급 혜택이 있는 의제매입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장류 업체들이 경영 및 마케팅부문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기업 경영보다는 판매처 개척 등 마케팅 부분임. 소규모이다 보니 자체 전문 마케팅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업주의 개인 인맥이나 역량에 따라 판로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다만,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신규 구매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의 선호도가 큰 편이었음.

라. 정책 건의 사항

○ 장류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건의 사항은 오폐수 처리 문제와 홍보·마케팅 지원 문제였음. 마을단위 공동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원료 등을 단순 세척한 경우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설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나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있음 .

- 입지에 있어서 주변 하수처리시설의 연계가 가능하고 제조장이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변경을 원하는 가공업체나 예비 창업자도 있음.

○ 홍보·마케팅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가 마케팅 능력이 없는 장류 업체들의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공공부문의 예산 지원 시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지 말고, 역량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았음. 또한, 지원 예산의 사용 용도가 너무 세분화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었음.

- 대표적 사례로 모 업체에 포장비로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경우가 발생

2.2. 절임류

2.2.1. 산업 개황

○ 절임류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2008년 3,947억 원에서 2012년 4,936억 원으로 25.9%의 증가율을 보임. 반면에 수출 실적은 같은 기간 동안 물량과 금액이 각각 93.1%와 12.9%의 감소율을 보여 급격한 수출 실적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 장류와 마찬가지로 동일 기간 동안의 출하량 증가율보다 출하액의 증가율이 훨씬 높아 절임류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

표 2-5. 절임류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출하량	220,258	205,950	222,971	1.2
출하액	394,739	388,730	496,936	25.9
수출량	28,001	6,402	1,931	-93.1
수출액	6,831	5,098	5,953	-12.9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절임류의 세부 품목별 시장 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일반 절임류의 비중이 전체의 95.2%로 나타나 당절임의 비중(4.8%)과 대조를 보임.

표 2-6. 절임류의 품목별 출하 현황 (2012)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

구분	출하량	출하액	수출량	수출액
계	222,971 (100.0)	496,937 (100.0)	1,931 (100.0)	5,954 (100.0)
절임류	212,242 (95.2)	430,069 (86.5)	1,491 (77.2)	4,138 (69.5)
당절임(인삼)	83 (0.0)	5,138 (1.0)	1 (0.1)	78 (1.3)
당절임(홍삼)	366 (0.2)	34,628 (7.0)	7 (0.4)	540 (9.1)
당절임(기타)	10,280 (4.6)	27,102 (5.5)	432 (22.4)	1,198 (20.1)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2.

○ 절임류 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기준과 유사한 10인 이하의 업체 비중이 전체의 73.5%를 차지하여 높은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2-7. 절임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1-4명	44.1	54.1	49.1	11.3
5-9명	26.3	20.1	24.4	-7.2
10-19명	13.8	12.9	10.9	-21.0
20-49명	11.7	8.7	11.1	-5.2
50-99명	2.5	2.5	3.0	20.3
100명이상	1.5	1.6	1.4	-6.8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각 년도.

2.2.2. 업체 실태 분석

가. 업체 개황

○ 절임류 업체의 실태 분석을 위해 업체 3곳을 방문 조사하였음. 기본적인 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시 종업원 수는 2 ~ 3명으로 비슷했지만 사업 기간, 작업장 규모, 매출액 등은 업체 간 차이가 있음. 주력 품목은 장아찌, 절임배추, 김치 등 절임식품인데, 국산 채소를 사용하여 절임류를 생산하고 있었음.

- 주 원료인 채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되, 부족분은 인근 지역 생산자에게 구매를 하여 사용

○ 생산한 상품의 판매는 직거래나 재래시장, 농협, 급식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행사 등을 통한 판매도 적지 않음.

- 직거래는 개인 간 입소문을 통한 전화 주문 등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온라인(on-line) 거래가 병행되고 있으나, 업체마다 비중의 차이 발생

표 2-8. 절임류 업체 개황

항목		업체 개황 (2013년 기준)		
		A 업체	B 업체	C 업체
기본 현황	사업 기간	13년	15년	6년
	소재지	충남 공주	전북 장수	전북 군산
	상시 종업원 수	2명	3명	2명
	작업장 규모	99㎡ (30평)	132㎡ (40평)	66㎡ (20평)
	매출액	1.2억 원	0.2억 원	1억 원
	공장 가동률	30%	20%	50%
	인증 관련	소규모 HACCP 준비 중	소규모 HACCP 준비 중	해당 없음
생산 현황	주력 품목	장아찌	절임배추, 김치	주박절임
	주 원료	무, 오이, 마늘청, 고추,참외 (국산)	배추 (국산)	오이, 무 (국산)
유통 경로	주 경로	재래시장, 농협	직거래	인터넷 직거래
	기타 경로	지자체 직거래 장터	인근 급식업체	전화 주문, 지역 행사

나. 시설·위생 관련 애로 사항

○ 절임류의 경우 구매 업체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소규모 HACCP를 시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과 시설 개보수 부담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모 업체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도 자부담 비용(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포기한 사례가 발생

그림 2-4. 절임류 숙성시설

○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장류 업체의 사례와 유사하게 초기 작업장 신축과정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음. 다만, 추후 증·개축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정화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었음.

○ 오폐수 관련해서는 배출되는 물이 소금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정화시설을 운용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업체 운영의 어려움이 큼.

- 일부 영세 농가단위 절임류 제조시설에서는 주변에 그대로 방류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문제가 발생 중

○ 한편, 절임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금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괴산군의 경우 절임배추용 소금물을 관광용 염전체험시설의 용수로 활용하여 성과가 발생하고 있음.

- 괴산군은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500톤의 소금 가공공장과 폐염수 자원화 시설을 조성 중
- 이중 일부 사업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의 체험용 염전을 만들어 소금생산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연간 1,000톤의 배추절임 소금을 처리 가능한 규모로 재생산된 소금은 관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등의 운동장과 도로 제설용으로 활용할 계획

그림 2-5. 염전 체험시설

○ 인증 또는 상품 표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상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표시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가 있음.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강의 수강 등을 하고 있었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특히, 강의 일정과 업무 시간이 중복되어 자주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

다. 경영·마케팅 관련 애로 사항

○ 절임류 생산을 위한 채소 등의 주요 원료는 대부분 자가 생산분과 마을 또는 인근 지역 농가 구매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원료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압박을 호소하는 업체가 있었음.

○ 업체 경영에 관한 애로 사항으로는 세무,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류 업체와 유사한 상황이었음. 다만, 절임배추 등의 경우 주변 업체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진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다수 있었음.

○ 절임류 업체들 중 소비자 직거래를 하는 업체는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적게 호소한 반면, 대형 마트나 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B2B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거래처와의 거래 교섭력(bargaining power) 격차에 따른 애로 사항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의 영세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됨.

라. 정책 건의 사항

○ 판매와 관련해서는 절임배추 등의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 문제 해결과 직거래의 효과 개선을 통한 판로 확보를 요청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가 외부 상인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문제와 지자체별 축제나 장터가 인근 타 지역에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 지방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대도시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실제 장터에 팔리는 물건들이 산지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서 상인에 의해 판매되는 사례를 다수 지적
- 또한, 기초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축제나 장터는 해당 지자체 관내 생산품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지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

fect) 창출을 위해 여러 시·군이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2.3. 음료류

2.3.1. 산업 개황

○ 음료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2008년 3조 2,721억 원에서 2012년 4조 2,777억 원으로 30.7%의 증가율을 보임. 수출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낮아 차이를 보임.

- 동일 기간 동안 출하량보다 출하액의 증가율이 높아 국내 시장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

표 2-9. 음료류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출하량	2,445,015	2,633,400	2,732,800	11.8
출하액	3,272,114	3,599,929	4,277,687	30.7
수출량	88,641	104,659	126,237	42.4
수출액	130,933	94,399	138,530	5.8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음료류의 세부 품목별 시장 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탄산음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즙이나 주스 등의 비중은 매우 낮아 편중된 품목별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0. 음료류의 품목별 출하 현황 (2012)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

구분	출하량	출하액	수출량	수출액
계	2,732,800 (100.0)	4,277,688 (100.0)	126,237 (100.0)	138,531 (100.0)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 가열	6,288 (0.2)	25,160 (0.6)	694 (0.5)	1,574 (1.1)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 비가열	45 (0.0)	852 (0.0)	- (0.0)	- (0.0)
과채주스(가열)	172,642 (6.3)	376,810 (8.8)	2,350 (1.9)	3,840 (2.8)
과채주스(비가열)	9,307 (0.3)	60,711 (1.4)	194 (0.2)	918 (0.7)
과채음료(가열)	346,969 (12.7)	469,552 (11.0)	28,235 (22.4)	26,238 (18.9)
과채음료(비가열)	4,950 (0.2)	11,076 (0.3)	2 (0.0)	4 (0.0)
탄산음료	1,211,899 (44.3)	1,413,681 (33.0)	35,655 (28.2)	21,269 (15.4)
탄산수	6,238 (0.2)	5,223 (0.1)	59 (0.0)	37 (0.0)
두유액	21,668 (0.8)	7,098 (0.2)	- (0.0)	- (0.0)
두유	237,555 (8.7)	404,512 (9.5)	3,086 (2.4)	4,345 (3.1)
분말두유	2 (0.0)	37 (0.0)	- (0.0)	- (0.0)
기타두유	372 (0.0)	950 (0.0)	- (0.0)	- (0.0)
유산균음료	90,433 (3.3)	62,930 (1.5)	503 (0.4)	449 (0.3)
효모음료	72 (0.0)	343 (0.0)	- (0.0)	- (0.0)
기타발효음료	831 (0.0)	9,434 (0.2)	3 (0.0)	48 (0.0)
인삼음료	945 (0.0)	6,872 (0.2)	264 (0.2)	1,082 (0.8)
홍삼음료	18,578 (0.7)	266,139 (6.2)	439 (0.3)	14,779 (10.7)
혼합음료	551,677 (20.2)	949,051 (22.2)	52,190 (41.3)	53,973 (39.0)

추출음료	8,775 (0.3)	54,050 (1.3)	75 (0.1)	447 (0.3)
음료베이스(분말)	1,242 (0.0)	12,338 (0.3)	99 (0.1)	1,078 (0.8)
음료베이스(기타)	42,313 (1.5)	140,869 (3.3)	2,389 (1.9)	8,450 (6.1)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2.

○ 음료류 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 업체의 기준과 유사한 10인 이하의 업체 비중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여 높은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타 품목에 비해서는 영세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연도별 추이를 보면, 4명 이하의 영세 업체와 100명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음료류 산업 구조의 양극화를 반영함.

표 2-11. 음료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1-4명	33.5	47.1	44.6	33.0
5-9명	19.2	12.6	16.7	-13.0
10-19명	15.0	10.9	10.8	-28.0
20-49명	15.0	13.2	12.3	-18.1
50-99명	9.0	6.9	6.4	-29.1
100명이상	8.4	9.2	9.3	11.1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각 년도.

2.3.2. 업체 실태 분석

가. 업체 개황

○ 음료류 업체의 실태 분석을 위해 업체 4곳을 방문 조사하였음. 기본적인

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시 종업원 수는 주로 1명으로 비슷했지만 사업 기간, 작업장 규모, 매출액 등은 업체 간 차이가 컸음. 주력 품목은 즙, 음료, 발효액 등인데,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하고 있었음.

- 주 원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되, 부족분은 인근 지역 생산자에게 구매를 하여 사용

○ 생산한 상품의 판매는 주로 자체 회원이나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행사나 기관 선물용 등으로도 판매가 진행됨.

표 2-12. 음료류 업체 개황

항목		업체 개황 (2013년 기준)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기본 현황	사업 기간	5년	3년	8년	16년
	소재지	경남 함안	경남 남해	경남 함안	전북 무주
	상시 종업원 수	1명	1명	1명	5명
	작업장 규모	49.5㎡ (15평)	99㎡ (30평)	82.5㎡ (25평)	33㎡ (10평)
	매출액	0.3억 원	0.7억 원	3억 원	1.7억 원
	공장 가동률	10%	20%	20%	50%
	인증 관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생산 현황	주력 품목	포도즙	유자음료, 유자청	민들레 농축음료	매실 발효액
	주 원료	포도 (국산)	유자 (국산)	민들레 (국산)	매실 (국산)
유통 경로	주 경로	개인 직거래	개인 직거래	개인 직거래	식재료 업체 공급
	기타 경로	기관 선물용으로 공급	전화 주문	전화 주문	인터넷 몰

나. 시설·위생 관련 애로 사항

○ 음료류 업체의 식품 가공시설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농축 또는 추출, 병입, 포장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숙성 등의 과정이 추가됨. 음료류 업체는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을 의향이 높으나, 시설과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HACCP 인증 관련 지원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중이 40 ~ 50%로 높은 상황인데, 그나마 지원 예산을 받을 기회도 많지 않은 실정

그림 2-6. 음료류 제조 시설

○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초기 작업장 신축과정이나 증·개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업체가 다수 있었는데, 특히 원료를 생산하는 농장 인근에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상당 업체들의 가공시설이 농림지역내 위치하여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규제 완화를 수혜 받고 있는 상황

○ 오폐수 관련해서는 단순 원료 세척 용수에 대한 기준 적용이 모호하여 행정 일선에서 혼선 빚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음. 또한, 규정을 잘 모르고 필요하지 않은 오수합병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등의 시행착오도 있었음.

○ 인증 또는 상품 표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상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표시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음. 특히,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많이 받는 음료류의 특성 상 식품위생 외 유기관련 인증의 서류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여 애로 사항이 많음.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강의 수강 등을 하고 있었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세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다. 경영·마케팅 관련 애로 사항

○ 음료류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는 대부분 자가 생산분과 마을 또는 인근 지역 농가 구매분을 활용하고 있었음. 다만, 일부 원료 농산물의 경우 생산 농가의 작목 전환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매실 농가의 사과로 작목 전환을 하여 원물 확보에 어려움 발생 중

○ 업체 경영에 관한 애로 사항으로는 세무나 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음료류 업체들이 경영 및 마케팅부문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기업 경영보다는 판매처 개척 등 마케팅 부분으로 공공 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라. 정책 건의 사항

○ 음료류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건의 사항은 토지 사용관련 인허가 완화였는데, 이는 주로 자가 생산되는 원물을 가까운 곳에서 바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됨. 상당수의 업체들이 농지 또는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었음.

○ 또한,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도 다수 제기되었는데, 주로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었음. 일부 업체들은 상·하역을 포함한 현장 물류 설비 또는 포장 관련 설비 요청도 있었음.

2.4. 떡류

2.4.1. 산업 개황

○ 떡류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2008년 2,641억 원에서 2012년 4,260억 원으로 6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수출 실적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량 증가율과 수출액 증가율이 비슷한 특징을 가짐.

- 동일 기간 동안의 출하량보다 출하액의 증가율이 다소 높아 국내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

표 2-13. 떡류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출하량	114,651	129,481	168,433	46.9
출하액	264,136	358,300	425,972	61.3
수출량	1,156	1,855	4,076	252.6
수출액	2,130	3,214	7,678	260.5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떡류 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기준과 유사한 10인 이하의 업체 비중이 전체의 99.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10명 ~ 49명의 중견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떡류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음.

표 2-14.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1-4명	97.8	98.2	97.7	-0.1
5-9명	1.6	1.2	1.5	-3.3
10-19명	0.4	0.4	0.5	30.1
20-49명	0.2	0.2	0.3	45.8
50-99명	0.1	0.1	0.1	-1.5
100명이상	0.0	0.0	0.0	0.0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각 년도.

2.4.2. 업체 실태 분석

가. 업체 개황

○ 떡류 업체의 실태 분석을 위해 업체 2곳을 방문 조사하였음. 기본적인 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시 종업원 수, 사업 기간, 작업장 규모, 매출액 등에서 업체 간 차이가 있음. 주력 품목은 떡류인데, 국산 쌀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었음.

- 부 원료인 콩 등은 국산이나 수입산을 사용

표 2-15. 떡류 업체 개황

항목		업체 개황 (2013년 기준)	
		A 업체	B 업체
기본 현황	사업 기간	1년	2년
	소재지	충남 서천	경남 의령
	상시 종업원 수	1명	5명
	작업장 규모	99㎡ (30평)	59.4㎡ (18평)
	매출액	0.5억 원	0.8억 원
	공장 가동률	50%	80%
	인증 관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생산 현황	주력 품목	송편	망개떡
	주 원료	쌀 (국산), 콩 (수입산)	쌀, 팥, 콩 (국산)
유통 경로	주 경로	인터넷 직거래	매장 판매
	기타 경로	개인 직거래 및 업체 공급	전화 주문

○ 생산한 상품의 판매는 주로 직거래나 매장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 떡 판매 업체에 공급을 시도하고 있기도 함.

나. 시설·위생 관련 애로 사항

○ 떡류 업체의 식품 가공시설은 장류나 절임류 등에 비해 HACCP 인증을 받기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조사 대상 업체도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설계 등을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

그림 2-7. 떡류 제조 시설

○ 떡류 업체는 농림지역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제약이 적은 편이었으나, 시설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업체가 일부 있었음.

- 특히, 농촌지역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회관, 농기계 창고 등)을 리모델링해서 가공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건축물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하는 문제도 제기 중

○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떡가공 창업을 준비 중에 산업(제조장)에 이용된 용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수 분류와 관련해서 단순 쌀 세척이나 떡 찌기 등에 주로 사용된 용수가 발생함에 이를 폐수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라고 지도하여 어려움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음.

-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법령 내용으로 행정 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 중

○ 인증 또는 상품 표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상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표시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음.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강의 수강 등을 하고 있었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세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다. 경영·마케팅 관련 애로 사항

○ 떡류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인 쌀은 대부분 자가 생산분과 마을 또는 인근 지역 농가 구매분을 활용하고 있었음. 다만, 일부 원료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원가 비용의 부담 때문임.

○ 업체 경영에 관한 애로 사항으로는 세무나 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판로 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홍보 행사 등의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음.

라. 정책 건의 사항

○ 떡류 업체의 건의 사항은 타 품목과 유사하였는데, 판로 확보에 대한 관련 지원 확대 건의가 많았음.

2.5. 한과류

2.5.1. 산업 개황

○ 한과류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2008년 804억 원에서 2012년 889억 원으로 10.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임. 수출 실적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액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동일 기간 동안 출하량은 감소하였으나 출하액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

표 2-16. 한과류 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톤,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증가율 (2008 ~ 2012)
출하량	14,919	16,541	14,515	-2.7
출하액	80,415	87,330	88,853	10.5
수출량	112	179	174	55.4
수출액	701	1,618	639	-8.8

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2.5.2. 업체 실태 분석

가. 업체 개황

○ 한과류 업체의 실태 분석을 위해 업체 2곳을 방문 조사하였음. 기본적인 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시 종업원 수, 사업 기간, 작업장 규모, 매출액 등에서 업체 간 차이가 있음. 주력 품목은 한과류인데, 국산 쌀을 사용하여 한과류를 생산하고 있었음.

표 2-17. 한과류 업체 개황

항목		업체 개황 (2013년 기준)	
		A 업체	B 업체
기본 현황	사업 기간	14년	8년
	소재지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상시 종업원 수	1명	4명
	작업장 규모	99㎡ (30평)	36.3㎡ (11평)
	매출액	1.5억 원	0.4억 원
	공장 가동률	20%	20%
	인증 관련	전통식품인증 준비 중	해당 없음
생산 현황	주력 품목	한과류	한과류
	주 원료	찹쌀, 쌀 (국산)	쌀(국산)
유통 경로	주 경로	인터넷 몰 판매	개인 직거래
	기타 경로	개인 직거래	전화 주문

○ 생산한 상품의 판매는 주로 자체 회원이나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도 활용되고 있음.

나. 시설·위생 및 표시사항 관련 애로 사항

○ 한과류 업체의 식품 가공시설은 단순한 편이지만, HACCP 인증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업체들은 느끼고 있었음. 이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의 개보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그림 2-8. 한과류 제조 시설

○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초기 작업장 신축과정이나 증·개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업체가 다수 있었는데, 생산시설의 구획이나 칸막이, 포장실 등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한과류의 경우, 쌀 씻는 물외에는 오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한과를 튀기는 기름은 폐유업자가 사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특히, 사업자의 판단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오폐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자체 건축담당자의 요구가 있다고 주장하여 상호간의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오수와 폐수 합병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폐수의 발생량을 제조장의 바닥면적, 작업자 수, 작업시간 등으로 집계하는 경우에 상호 충돌이 발생 가능

○ 인증 또는 상품 표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상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표시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음.

○ 한과류의 경우, 판매 시기와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 제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수 요구되고 있었음. 대표적으로 한과의 포장재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한 포장 지원으로 내용물이 아닌 포장에서 시장 경쟁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강의 수강 등을 하고 있었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세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다. 경영·마케팅 관련 애로 사항

○ 한과류 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는 대부분 자가 생산분과 마을 또는 인근 지역 농가 구매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원물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있었음.

○ 업체 경영에 관한 애로 사항으로는 세무나 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과류 판매의 경우, 특정 기간에 주로 팔리는 시기적 제약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과류가 시기 구분 없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함.

라. 정책 건의 사항

○ 한과류 업체의 건의 사항은 타 품목과 유사하였는데, 특히 특정 시기에만 주로 판매되는 한과류의 특성상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대한 관련 지원 확대 건의가 많았음.

제 3 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관련 정책

1. 국내 정책

○ 국내에서 소규모 식품가공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많지 않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상 사업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했던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지만, 대상사업자를 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기, 차량 관련 상품, 번역, 웹 디자인 등 모든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농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정책은 직접 가공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한정되었음. 예를 들어, 식품 컨설팅,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농업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식품산업 자체가 각종 규제와 대규모 초기자본 투입 등으로 진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판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판매에는 강점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는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특성과 식품의 판매라는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

○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관심이 가장 먼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정책은 지자체별로 가공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들의 욕구를 일부 해소해주고자 도입되었음.

○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가공이 강조되고 있음.

- 6차 산업은 농업인의 역할을 농산물 생산(1차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 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과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농업인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 농산물의 생산(1차 산업)과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지만, 농산물 가공과 특산품 제조 가공(2차 산업)은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농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

1.1. 중앙정부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수월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사업임.

- 6차 산업의 세부 사업에 2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산물 가공 분야가 포함

○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가공분야는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창업 관련 부분, 금융 부분, 컨설팅 부분, 판매 및 소비 부분 등을 총망라하고 있음.

- 6차 산업에 포함되는 1차 및 2차와 3차 산업 가운데, 각종 규제 때문에 가장 추진이 쉽지 않은 산업이 농산물 가공분야(2차 산업)

○ 농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융, 컨설팅 등)은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지만, 식품 제조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농업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규제가 많아 농업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농지법」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 제조와 관련된 까다로운 규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들은 근거 없는 규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목적을 가진 규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농업인에 도움이 되면서, 법규나 규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규제 완화나 예외 조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가운데,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면, 금융지원, 컨설팅, 교육, 시설 지원, 지자체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음.

1.1.1. 금융 지원

○ 농업의 6차 산업화 가운데,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금융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청 등에서 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이나 시설현대화사업 등은 농산물 가공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
- 중소기업청의 PL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에 매우 중요

표 3-1.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금융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국내농산물을 수매하여 가공하는 업체 수매자금 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 지원	·꿀·녹용 가공산업 육성 ·쌀 가공산업 육성
중소기업청	PL단체보험 가입 지원	·농공상 중소기업 생산제조 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 (PL: Product Liability) 보험 가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등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2. 컨설팅

○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 경영체에 농산물 가공업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제조와 관련된 전문 컨설팅을 제공

표 3-2.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컨설팅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경영체 컨설팅	·마을 공동경영체, 체험휴양마을 등의 6차산업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업체 상시 기술·경영 컨설팅	·농식품업체(영농조합 등 포함)의 가공, 유통, 위생 등 기술적 애로사항 컨설팅, 경영지원 컨설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 애로 상담	·식품제조·외식 기업의 경영 및 기술 등 애로사항 상담
	현장코칭 (경영, 기술코칭)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영·기술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식품·외식 전문가의 현장 방문 지도
	심층 컨설팅 (창업지원 컨설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창업기업 육성 컨설팅
	심층 컨설팅 (고부가품목전환 컨설팅)	·단순가공, 보편화된 가공식품을 고부가 기능성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활성화	·유기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인증 컨설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산업·BT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농산업·농식품·BT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3. 교육

○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6차 산업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귀농 및 귀촌 분야임.

표 3-3.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교육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	·식품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전문식품인력 양성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자영업 창업을 희망자에게 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인턴체험 등을 통해 창업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4. 수출 지원

○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과 관련된 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 가운데도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

- 하지만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사업은 소규모 가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표 3-4.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수출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출 농식품 인증지원	·특정 국가 수출시 필요한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 지원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브랜드 사업	·유자차 수출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자차 수출 지원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샘플 수출 시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
한국식품 산업협회	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식품 소재 및 기능성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식품박람회 참석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5. 연구 개발 (R&D)

○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기능성 및 효능 분석, 특정 현장 애로사항(포장재, 유통기한 등)의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개별 사업체별로 진행되는 것도 많은 상황임.

표 3-5.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국내 농수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지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	·농수산물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농식품분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식품 가공과 관련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업체에게 기술정보 제공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6. 출원·인증 및 평가 지원

○ 가공식품의 특성에 따른 인증에 대한 업체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의 KS인증, 전통식품 인증, 유기가공 식품 인증, 술 품질인증 등이 해당

표 3-6.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출원·인증 및 평가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산업표준 (KS 인증제도)	·마가린, 설탕 등 185개 품목에 대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서 교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과류, 김치류 등 77개 품목에 대해 전통식품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축산 유기가공식품 인증
	술 품질 인증제도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1.7. 사업 및 시설 지원

○ 정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 특정 목적을 가진 사업을 지원하거나 시설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려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는 실제 농업인들의 가공 수요를 현실적으로 해소해주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6차사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활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HACCP이 의무화되는 음료(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 필요

표 3-7.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사업 및 시설 지원

지원 기관	사업명	사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산업으로 연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 지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외식·체험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5인 이상참여 공동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2. 지자체 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전북, 경북, 제주 등이 대표적임.

- 전반적으로 농산물 생산이 많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 관련 지원사업이 활발히 시행 중

표 3-8.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지원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강원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및 전통주 명품화 등 지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 지원
충북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환경정화시설, 노후시설 교체 지원
충남	6차산업화 지원사업	·농식품 제조·가공장, 제조·가공설비 및 장비구입,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전북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단기형(1년) 기능성식품 개발 지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인증 획득을 위한 안전·위생시설 및 장비, 건물 개·보수
	농가주도형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농가소득 모델”육성
전남	식품가공업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도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 수수료 일부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운영	·도내 농축특산물, 제조식품 등에 도지사 인증품목임을 정하는 상표 사용허가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도내 농식품 제조업체에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시제품 제작 지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	·반찬 상품화를 위해, 가공공장(작업장), 세척기, 포장기, 위생시설, 저온저장고 등
경북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50% 이상)하는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자가 또는 지역 내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지역농산물 100%) 전통(발효) 및 기능성 건강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농업인 지원
경남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규격화, 농식품가공, 전통주, 발효식품 등 지원
제주	식품제조업체 HACCP시설 지원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위생설비 등 HACCP시설 구축 지원
	식품가공업체 노후시설 지원	·도내 농산물 가공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 구입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 상품개발 설비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 신상품 개발을 위한 장비(병입시설, 라벨기, 포장기, 캡핑기 등) 지원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 운영지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고소리술, 감귤와인, 감귤주, 백련초주, 보리술, 오가피술, 좁쌀탁주)에 대한 신제품 시험 제작 지원
	감귤가공식품개발 및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감귤 가공업체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1.3.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 본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사업으로, 농업인이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6차 산업 추진전략과 달리, 이 사업은 농업 중심의 지자체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 추진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하나
- 다만,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시작했다는 특징 보유

1.3.1. 도입 계기

○ FTA의 확대 및 국내 필요에 따른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원물 상태로 판매해서는 적절한 가격을 받기 어려움. 그에 따라 원물이 아닌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농업인들 사이에 급증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kg을 원물로 판매하면 2만원을 받지만, 이를 가공하여 즉석밥으로 판매하면 10만원, 떡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12만 5천원, 증류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21만 3천으로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10k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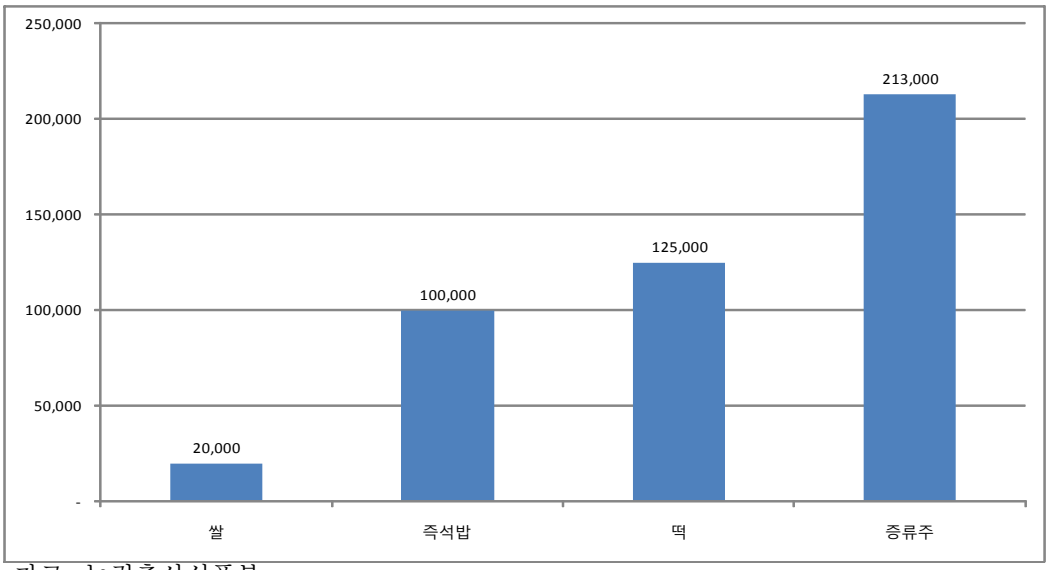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시장에서 고가에 팔 수 있는 상품(上品) 외에도, 저가 혹은 비품 농산물도 많이 발생함. 이런 저가 혹은 비품 농산물을 그대로 시장에 출하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남.

-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비품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이러한 요구의 한 해결책으로써 농산물 가공이 주목을 받기 시작

○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산(1차 산업)에 농산물 가공(2차 산업)을 결합하고, 여기에 농촌관광이나 체험(3차 산업) 등을 결합하는 '6차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됨.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고리 역할을 해주는 농산물 가공(2차 산업)이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6차 산업도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기여

○ 하지만 농업인이 농촌지역에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가공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제4장 참조)

- 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시설(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농지법」 등의 농업 관련 법률에서는 농지 등에 가공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규제
- 또한,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관련해 폐수 관련 시설을 농지 등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

○ 법적·제도적 규제 외에도, 경제적인 요인도 농업인의 가공 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대규모보다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를 가공하려는 의도가 강함. 즉, 소규모 가공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이 다수
-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따라 각종 시설을 설치 필요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 각종 가공설비 설치 등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는데, 대부분의 경우 농산물 가공식품 예상 판매액보다 시설비가 많이 소요

○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 특히,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농산물의 가공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도입한 것이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임.

- 지자체에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시설을 지원해줌으로써, 규제가 까다로

운 식품 가공과 관련된 인허가는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혹은 위탁업체가 받고,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가공하고 판매만 하는 형태의 분업 체계

- 농업인은 자신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지만 제조원은 가공기술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인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에 가까운 생산 방식
- 또한, 다양한 가공시설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 사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가공과 관련된 장비를 매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설의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림 3-2.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내부 설비

1.3.2. 선정 실적

○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자체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을 매년 4개소씩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

- 사업 규모: 2010년(4개소) → 2011년(8개소) →2012년 (12개소) 등

표 3-9.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선정 실적

연차	사업 지자체 및 주요 가공품
1년차 (2010년)	강원 횡성(미숫가루, 야채추출차, 도라지환 등) 전북 장수(사과생즙, 사과잼, 오미자청 등) 경북 의성(쌀엿, 과일 퓨레 및 잼, 산수유청, 복분자청 등) 경남 함양(양파즙, 사과시럽, 사과말랭이 등)
2년차 (2011년)	인천 강화(조청, 잼, 음료, 청 등) 전북 김제(플레이크, 조청, 과자 등) 전남 무안(분말, 김치 등) 경북 상주(음료수 등)
3년차 (2012년)	강원 정선(엑기스, 차, 환 등) 충북 제천(발효제품, 조미료 등) 전북 군산(주류, 분말, 팩 등) 경남 의령(분말, 환, 건조가공 등)
4년차(2013년)	충남 논산(잼, 차, 떡 등) 전남 영광(떡, 빵 등) 강원 원주(진액, 환, 즙 등) 강원 삼척(농축액, 음료, 정차 등)

자료: 농촌진흥청.

○ 2013년까지 총 16개소가 선정 및 사업을 완료했으며,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 속도는 조금씩 다름. 초기에 선정된 지역들은 사업진행속도가 빨라 구체적인 가공식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

역에서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식품 제조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품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민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을 가공하고자 할 때 가공시설 및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이들 시설을 활용하면 별도의 인허가나 시설을 구비하는 투자 없이도 시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므로 창업초기 투입되는 비용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농산물을 가공, 판매가 가능
- 또한,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조사를 통해 이 아이템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창업 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쉬워지는데, 특히 소량의 수요자 요구에 의한 농산물 가공식품은 적법하게 판매 가능하므로 손익분기점이 낮아 적은 소득이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해당 사업의 선정지역을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강원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전북이 3곳으로 많음. 경북, 경남, 전남은 각각 2곳씩 선정됨.

표 3-1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의 지역별 분포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합계
선정 사업 수	1	4	1	1	2	3	2	2	16

자료: 농촌진흥청.

○ 일부 사업 진척이 빠른 지역(전북 김제)에서는 식품 제조에 관련된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실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김제의 경우, 인근에 전주라는 대형 소비시장이 있어 농산물 가공식품의 판매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
- 또한 이미 꾸러미 사업 등의 로컬 푸드 사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이와 결합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여 해당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

○ 하지만 아직까지 운영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가공지원센터도 있으며, 위탁업체를 구하지 못한 센터도 있으며, 식품 제조 관련 인허가를 얻지 못한 센터도 있음.

1.3.3. 적용의 어려움과 문제점

○ 농촌진흥청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포함해,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 가장 먼저 가공센터의 운영 주체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
- 초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인 센터 소장의 영리 추구 활동이 적절한지의 여부, 식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위탁 운영 방식도 적극 검토
-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 식품 제조와 관련된 인허가의 주체가 결정되는데, 물론 공장 설립 인가는 센터 소장 소관이자만 식품 제조 관련 인허가 주체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

○ 센터 운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활성화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농가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이렇게 가공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데 있음. 즉,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설 및 장비의 가동률이 낮아서 가공센터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움.
-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운영 주체, 특히 위탁의 경우, 위탁운영주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는 실정

-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수수료만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의 가동률이 매우 높아야만 하나, 농산물의 특성상, 그리고 농업인이 가공하는 물량의 제약상, 높은 시설 가동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사업대상지역 선정도 고려할 부분이 있음. 현재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은 소비나 판매 가능 시장의 존재 유무나 거리보다는 농산물의 종류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가공센터의 가장 큰 애로점 가운데 하나가 가공 농산물의 판매로 소비시장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 예를 들어, 전북 완주의 경우에는 전주라는 배후 소비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공한 농산물의 판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나, 주변에 배후도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땅한 소비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 경험 중

2. 주요국 정책

2.1. 미국의 관련 정책

2.1.1. 소규모 식품가공업과 관련된 규제: 캘리포니아

○ 미국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업(small-scale on-farm food

processing)을 직접 가공과 상업용 키친(commercial kitchen)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상업용 키친은 주거용 키친(residential kitchen)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상업용 키친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판매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즉석판매식품업과 유사한 형태로 보임.

- 주거용 키친에서 만들어진 식품은 판매가 불가능

그림 3-3. 상업용 키친 사례

자료: 장현동 외 (2011)

○ 미국은 가공의 종류, 가공되는 식품, 판매 방식과 유통범위 등에 따라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정부(county)의 규제를 받음. 연방수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주정부 차원에서는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 DHS) 산하의 식품의약품 지원(Food and Drug Branch, FDB),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환경국(Environmental Health Service, EHS)가 관할함.

○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가공등록(processed food registration)을 받아야 함. 이 등록은 주 정부의 보건국의 FDB 소관 업무임.

- 이 등록은 일종의 보건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허가해주는 permit

○ 가공식품의 판매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 정부의 FDB가 관장하지만, 다른 주에까지 판매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FDA의 규제를 적용받음.

○ 상업용 키친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에 따라 주 정부 혹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매 판매를 위해서는 주 정부의 DHS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하지만 식품가공등록(processed food registration)을 받기 위해서는 키친 시설은 주택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반면, 소매 판매에 한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EHS의 승인만 받으면 됨.

○ <u>통조림 면허(Cannery License):</u> 저산성(low-acid) 식품은 통조림 면허가 있는 곳에서만 가공이 가능함.

- 조각이 큰 저산성 식품이나 건조식품 정도만 통조림 면허가 없는 곳에서 가공 가능하고, 채소를 포함해 나머지 대부분의 식품 가공은 통조림 면허가 있는 곳에서만 가공 가능
- 통조림 면허는 주 정부의 식품의약품 지원(FDB)에서 관할

○ <u>토지 이용 계획 허가 (Land Use, Zoning and Planning Permits):</u> 지자체 단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업지역(agricultural zoning district) 내에서는 농산물 가공용도(agricultural processing uses)로의 토지 이용이 가능
- 바닥면적(floor area)이 5,000평방피트(464.526㎡) 이하고, 해당 사업지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이용허가(Use Permit)가 불필요하나, 위의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이용 허가가 필요
- 해안지역인 경우에는 토지이용 허가와 함께, 해안사용허가(Coastal Permit)도 필요
- 토지이용 허가 이후, 건물의 신축, 확장,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계획국(Planning Department)과 협의 필요

○ 건축물 허가(Building Permit): 식품의약품 지원의 허가를 받은 가공시설은 주택이나 부속창고가 아닌, 농장 혹은 목장의 부속건물이어야 함. 다만, 식품 가공을 위한 건축물은 적절한 상수도 시설, 배수시설, 하수시설, 폐수시설, 화장실 등을 포함해, 연방법규(the Federal Code of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우수제조시설(good manufacturing practices)"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건축국(Building Department)의 건축물 허가(building permit) 필요
- 도소매를 같이 하는 경우, 소매 시설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매 시설은 주 정부의 승인 필요
- 소매시설은 반드시 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handicapped-accessible) 의무화

○ 위생 자격증(Food Handler's Certificate) 및 운영 허가(Permit to Operate): 즉석에서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건환경국(EHS)의 운영 허가(permit to operate)를 받아야 함. 또한, 음식물 준비 및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자는 위생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폐수 처리 (waste disposal):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로 처리할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환경국(EHS)의 감독을 받아야 함. 오염 정도가 낮은 폐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폐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도 있음.

○ 식품가공 등록(Processed Food Registration): 식품을 가공하거나 가공식품 창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 정부의 보건국(DHS) 산하의 식품의약품 지원(FDB)에 등록을 해야 함.

○ 캘리포니아는 켄터키와 달리, 캘리포니아산 농산물이나 과일을 주원료나 주된 원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농가가 식품 제조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2.1.2. 가내 식품공업: 켄터키

○ 미국 켄터키 주는 House Bill 391 (HB391)와 Farmers Market Legislation을 통해, 켄터키 주 내에서 농업 생산자가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일부 예외를 인정해줌.

- 첫째, 최종 가공식품의 주원료나 주된 원료가 켄터키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것일 것
- 둘째, 판매 장소는 (1) 승인을 받은 파머스 마켓(approved farmers markets), (2) 허가를 받은 노상 판매대(certified roadside stands), (3) 가공업자의 농장(the processor's farm) 등으로 한정할 것
- 다음과 같은 식품은 제조 불가:
  - 크림이 채워진 파이(crème-filled pies)
  - 머랭이 올라간 파이(pies with meringues topping)
  - 커스타드(custards),
  - 치즈케익(cheesecake)
  - 새싹류(raw seed sprout)
  - 기름에 절인 마늘(garlic-in-oil)
  - 진공포장 식품(vacuum-packaged food)
  - 아기용 식품(baby food)
  - 기타 육류나 생선류가 포함된 식품 등

○ HB 391에서는 가내 식품공업을 가내 식품가공업(homebased processor)과 가내 식품 미세가공업(homebased microprocessor)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어느 부류에 포함되든, 반드시 켄터키에서 재배된 농산물이나 과일이 최종 가공식품의 주된 재료나 원료이어야 함.

○ 가내 식품가공업(homebased processor)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식품 제조에 대한 허가임.

- 가내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보건국(Cabinet for Health Services)에 매년 등록을 해야 하며, 식품 표시 등의 규정도 준수 필요
- 이 부류에서 제조 가능한 식품의 종류:
  - 과일과 채소의 절단된 것(cut fruits and vegetables)
  - 채소류 혼합믹스(prepackaged mixed greens)
  - 과일, 채소, 넛류, 허브 등의 건조된 것(dried fruits, vegetables, nuts, and herbs)
  - 잼, 젤리, 과일 버터, 메이플 시럽 등(jams, jellies, preserves, fruit butters, maple syrup, and sorghum)
  - 가공업자가 직접 재배한 과일이나 채소, 넛류, 허브 등이 포함된 빵, 케익, 파이, 쿠키(breads, cakes, pies, and cookies that contain a fruit, vegetable, nut, or herb grown by the processor)

○ 가내 식품 미세가공업(homebased microprocessor)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고산(high-acid) 혹은 저산(low-acid) 식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임.

- 가내 식품 미세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켄터키 대학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50를 납부하고 전 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뿐 아니라, HB301에서 규정한 두 종류의 시험도 통과 필요
-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가공식품의 조리법은 사전에 켄터키 대학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조리법당 $5

- 농가가 켄터키 보건국으로부터 식품제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 켄터키 대학이 주관하는 워크숍 완료 증명서(3년간 유효), (2) 켄터키 대학으로부터 받은 조리법 승인서, (3) 식품 표시 준비사항 (4) 적절한 용수 확보 확인서, (5) 신청비용 $50과 함께 제출 필요
- 보건국으로부터 허가(certification)를 받으면, 자신이 제출한 조리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해도 되고, 표준 제조법에 따라 제조할 수도 있는데, 선택은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결정
- 이 부류에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 압축 캔 채소(pressure canned vegetables)
  - 과일과 채소류 피클(pickled fruits and vegetables)
  - 토마토와 토마토 가공품(tomatoes and tomato products)
  - 살사(salsa)
  - 바베큐 소스(barbecue sauce)
  - 페퍼 또는 허브로 만든 젤리(pepper or herb jellies)
  - 허브 식초(herbal vinegars)
  - 저설탕 혹은 무설탕 잼과 젤리(low- or no-sugar jams and jellies)

○ 식품 표시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으로는 식품의 명칭, 식품 제조원과 주소, 식품 성분, 식품의 순무게 또는 부피, 식품의 제조일자, “이 상품은 가내 제조 식품임.”이라는 표기 (“This product is home-produced and processed.”)임.

○ 켄터키의 특징이라면, 캘리포니아와 달리, 켄터키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 혹은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농가형 식품 가공업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임. 또한, 판매장소, 제조 가능 품목 등에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식품 제조나 판매를 억제하고 있음.

- 특히, 판매장소를 지정(켄터키 주내에 한정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

전청(FDA) 등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다른 주에까지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 필요

-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비해, 농가형 식품제조업을 하기 위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상황

그림 3-4. 켄터키 주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농가(McDowell Farms Salsa) 홈페이지[6]

자료: 장현동 외 (2011)

6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할 것.

○ 대학의 extension service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켄터키의 특징임. 켄터키 대학은 미세가공업을 하려는 농가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워크숍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농가가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법(레시피)에 대한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음.

○ 제조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도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고위험 식품군, 위해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나 여건 등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점,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점,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 제조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보다는 켄터키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2. 일본의 관련 정책

2.2.1. 소규모 식품가공업과 관련된 규제: 일본

○ 식품 제조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법률은 「식품위생법」임. 그 외의 식품 관련 법률로는 「식품안전기본법」, 「도축장법」,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건강증진법」, 「가금류의 처리와 규제 및 검사에 관한 법률」, 「광우병특별대책법」, 「내장 등 부산물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지자체(도쿄도의 경우) 수준에는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식품제조업 등 취급조례」, 「식품위생법 시행조례」, 「복어취급에 관한 조례」, 「동물질 원료의 운반 등에 관한 조례」 등이 해당

○ 일본에서 농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34개 업종에 포함되는지부터 알아야 함. 34개 업종에 포함될 경우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의 영업허가가 필요함.

- 34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 필요
- 2012년 현재 일본의 1都 1道 2府 43縣의 지자체 가운데, 27개에서만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

표 3-11. 일본의 영업 허가 필요 업종

분 류	업 종		
조리업 (2개)	1. 음식점 영업	2. 다방 영업	
제조업 (22개)	1. 과자 제조업	2. 팥소류 제조업	3. 아이스크림 제조업
	4. 유제품 제조업	5. 식육제품 제조업	6. 어육반죽제품 제조업
	7. 식품의 냉동·냉장업	8. 청량음료수 제조업	9. 유산균음료 제조업
	10. 빙설 제조업	11. 식용유지 제조업	12. 마가린·쇼트닝 제조업
	13. 미소된장 제조업	14. 간장 제조업	15. 소스류 제조업
	16. 주류 제조업	17. 두부 제조업	18. 낫또 제조업
	19. 면류 제조업	20. 반찬 제조업	21. 통조림·병 리필식품 제조업
	22. 첨가물 제조업		
처리업 (5개)	1. 우유 처리업	2. 특별 우유착유 처리업	3. 집유업
	4. 식육 처리업	5. 식품 방사선조사업	
판매업 (5개)	1. 우유류 판매업	2. 식육 판매업	3. 어패류 판매업
	4. 어패류 경매영업	5. 빙설 판매업	

자료: 일본 농무성

○ 일본 지자체의 식품제조시설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위생 상 지장이 없는 장소일 것
- 주거시설 등과 구획되어 있을 것 (전용 제조실)
- 벽·천장은 부드럽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 (벽은 바닥에서 1m는 내수성일 것)
- 바닥은 배수 청소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할 것(내수성)
- 채광 및 환기가 충분한 시설일 것(100룩스 이상 환기 설비)
- 쥐,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일 것 (방충망 설치)
- 사용하기 쉬운 싱크대 등의 세척 시설을 설치할 것. 또한, 급탕 설비를 갖출 것
-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 시설을 설치할 것
- 탱크의 크기는 JIS VL710 (40cm×32cm: L5 크기) 이상일 것
- 세제 살균제를 공급하는 장치 (고정식)를 갖출 것
- 수도꼭지의 손잡이는 레버식 답보식 센서식이 바람직함
- 공용 수건은 사용하지 않고, 종이 타월 등을 사용할 것
- 냉장고와 실내에 온도계를 구비할 것
- 기구류 및 포장 용기 등을 청결하게 보관할 것
-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멸균기를 설치할 것
- 원료 수입에서 제품 출하까지의 작업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레이아웃을 설정할 것

○ 위에서 제시한 34개 업종 외에, 간단한 농산가공품에 관해서는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도도부현에서 제정한 식품위생 관련 조례에서 요구하는 제조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제조시설은 주거공간이나 주방 등과 나눠져 있어야 함. 또한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조례를 통해 특정 식품의 제조에 허

가를 얻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음.

- 다음과 같은 농산가공품은 영업허가가 불필요: (예시)
  - 절임(츠케모노): 묵은 채소 절임(후루즈케), 얼절이 야채(아사즈케), 우메보시, 카부라스시 등
  - 가열 조리한 것: 죽순 익힌 것(타케노코미즈니)
  - 살짝 데친 것(블랜칭)
  - 건조야채 등
  - 다수의 잘린 야채 혼합물
  - 염장 야채
  - 말리거나 구운 뿌리야채(감자, 고구마, 토란 등), 말린 과일
  - 절편, 노시모찌 (콩, 쑥 등이 혼합되지 않은 것)
  - 잼류

○ 일본은 위생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영업허가가 필요한 34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식품 제조가 가능함. 따라서 일본의 농산가공품 제조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음.

제 4 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제약 요인 분석

1. 법·제도적 제약 요인

1.1.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1.1.1.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의 구분

○ 특정 상품이 농산물 혹은 임산물인지, 아니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규제가 크게 다름. 즉, 해당 상품이 농·임산물로 분류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면제되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면, 가공식품 제조와 관련된 법규와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함. 따라서 특정상품이 농·임산물로 분류 되는가 혹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가가 매우 중요해짐.

○ 특히, 농·임산물은 가공정도에 따라 농·임산물로 분류되기도 하고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함.

- 현재 상품의 농·임산물의 가공식품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여 판단
- 가공식품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품첨가물의 첨가 여부, 현격한 성분 변화 여부, 외형의 큰 변화 여부, 조리 후 섭취 여부 등으로, 이들 기준에 맞춰 가공식품 여부가 결정

그림 4-1. 농·임산물 가공품의 가공식품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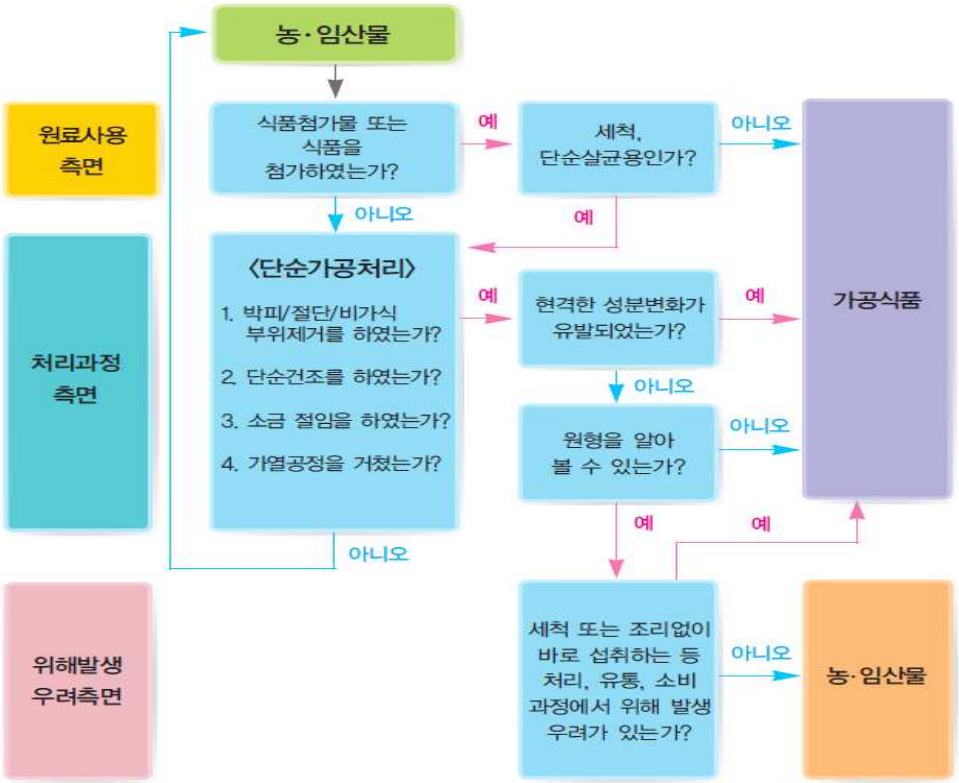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실제로 단순 가공한 농·임산물의 가공식품 여부는 실제 농업인들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함.

표 4-1. 단순 가공 농·임산물 가공식품 여부 예시

단순 가공 처리 내용	가공식품 여부	판단 이유
○ 사과를 껍질 채 16등분을 하여 단순 건조시킨 것	농산물	현격한 성분 변화 없음
○ 곶감을 단순 박피하여 건조	농산물	현격한 성분 변화 없음
○ 세송이버섯을 스틱 또는 사각 형태로 단순 절단 건조한 것	농산물	현격한 성분 변화 없음
○ 감자와 당근을 7cm 정도로 채 썰어 투명비닐로 포장한 제품으로 볶음용 채소	농산물	현격한 성분 변화 없음
○ 당근, 감자, 호박 등을 박피, 절단, 세척, 혼합, 진공포장, 살균, 냉각한 제품으로 재가열 후 섭취 제품	가공식품	조리 후 섭취
○ 탈피한 생 아몬드를 1시간 동안 볶은 제품	가공식품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식품으로 분류
○ 브로콜리를 2~3cm로 절단한 제품	가공식품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음
○ 시금치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	가공식품	과채가공품으로 분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1.2. 시설 관련 규제

○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
- 특히, 식품가공을 위한 “건물”과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설치에 따른 기준 등도 제시
- 또한, 작업장에는 식품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오염시설과도 일정 거리를 둘 것을 요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1.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농업인, 법이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1.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지자체장이 조례·규칙을 통해 별도의 시설기준을 만들면,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됨.

○ 문제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방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음.

- 2014년 9월 현재,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사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지자체는 20여개이나 이중 10개 지자체(남양주시, 무주군, 진주시, 괴산군, 거창군, 봉화군, 공주시, 단양군, 원주시, 구례군, 장성군, 함평군)가 시설기준을 정하여 시행중임. 조례·규칙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농식품 가공에 대한 '지원' 내용이 많을 뿐 시설기준을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음.

표 4-2. 농산물 가공 관련 지자체 조례

지자체	소규모 여부	사업장 규모	연매출	원료농산물
거창군	×	-	-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채취·구매한 농산물
제주도	○	66㎡	2억 원 미만	·농어업인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66㎡ 이하 시설 소유 및 제주산 농수산물
남양주시	○	33㎡	1억 원 미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진주시	○	66㎡	1억 원 미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괴산군	○	330㎡	2억 원 미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자료: 각 지자체

1.2. 「농지법」상의 규제

○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지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인이 식품 가공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는 농수산물의 가공 및 처리 시설이 포함
- 또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도 예외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②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절단·건조하는 시설의 경우, 총면적이 15,000㎡ 이하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식품위생법」 상의 공장에 해당되는 시설을 농지에 설치가 가능함.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하지만 법 조항의 해석에 몇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농산물 가공이 법에서 규정한, '가공·절단·건조' 과정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임.

- 특히, 절단이나 건조 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가공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배제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
- 현재는 농지법의 해석을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석하므로 향후 농업진흥구역에서 식품제조업이 가능

○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불명한 부분이 있음.

- 국내산 농산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여야 주된 원료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해당 식품의 핵심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떡의 경우 핵심 재료인 쌀, 찹쌀과 곡물을 의미 하며, 설탕 등 부원료에 대하여 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 그동안 농촌에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발목을 잡은 규제가 폐수 관련 규제였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식품제조업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제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필요

○ 기존에는 위의 조항에 따르지 않고,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었음. 따라서 이전에는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으려면 1일 폐수배출량을 0.1세제곱미터 이하로 조절했어야 했음.

○ 하지만 이 규제는, 광유류(鑛油類)를 포함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20세제곱미터 이하로 배출하되, 폐수가 공공 혹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기만 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도록 대폭 완화되었음.

- 이 조항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폐수 관련 규제는 더 이상 큰 영향이 없는 상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별표 4]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의 규제

○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 현재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임.

○ 이 두 가지 법령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건축법」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별표 1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이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토를 목적에 맞게 용도를 구분하고,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예를 들어, 농림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의 농산물 제조장이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너”목에 해당되는 시설이므로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외항목에 해당하여 제조장을 건축할 수 없음.
- 다만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할 경우「농지법」에 따라 농산물 가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함.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참고

○ 이와 같이, 특정 용지에 식품을 가공할 목적으로 건축을 건축할 경우, 해당 용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지를 확인해야 함.

○ 기존에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 여러 지역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별표 16>의 2의 "아"목을 통해,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한 것으로 한정한다) ·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농산물 가공장 혹은 농식품 제조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음. 따라서 농어민 중심의 농수산물 가공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용도지역에서도 농식품 가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가가 영위하고자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에서 지정한 “제2종 근

린생활시설” 가운데 “너”목에 해당함.

- 이 조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이 아닌 동일한 <별표 1> 17의 “공장”으로 분류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할 수 있음. - 바닥면적이 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이 건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을 등록하는 것이, “공장”보다는 상당히 많은 용도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축이 가능함.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구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제2종 근리생활시설 너목[제조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음(계획관리지역 강진군, 남해군 사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제조장] 설치 불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도록 개정·공포하면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이 가능해짐으로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계획관리지역 강진군, 남해군 사례)

표 4-3. 「국토법」(용도지역)에 따른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용도지역			식품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X	X
		제2종 전용주거지역	X	X
		제1종 일반주거지역	○(두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X	○
		제3종 일반주거지역	X	○
		준주거지역	X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X	○
		일반상업지역	X	○
		근린상업지역	X	○
		유통상업지역	X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X	X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X	○

	생산관리지역	○	X
	계획관리지역	X	X
농림지역		X	X
농업진흥구역		○	○
농업보호구역		X	X
자연환경보전지역		X	X
자연취락지구		○	○

2. 경영·마케팅 제약 요인

2.1. 경영 제약 요인

2.1.1. 원료 농산물 확보

○ 식품가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가 생산 농산물이나 마을(인근지역) 농가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 초기에는 원료 농산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음. 이후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지역 농협을 통한 구매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한계를 가짐.

○ 반면에 부 원료로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는 일부 업체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회 구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양질의 원료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원료 농산물 확보와 관련하여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원료농산물 구매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임. 원료 농산물이 수확되는 시기가 짧아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나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기 시행중인 농산물 수매자금은 지역

내 시설규모가 큰 식품업체나 매출규모가 큰 업체에 우선 배정되므로 소규모 농산물가공업체는 배당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의 구매 원료 농산물 대부분이 국산 농산물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산물가공업체에 상대적으로 소액(2천만 원~5천만 원) 규모로 융자지원 사업으로 원료 구매 자금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

○ 구매한 원료 농산물에 대한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도 품목에 따라 발견되고 있음. 소규모 시설을 가진 업체들의 경우 적절한 시설을 가진 저장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과일을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지 못해 원료 농산물의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

그림 4-2. 산지 저온 저장고

○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원료 농산물 재배 농가 감소로 인한 원료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매실 음료류 생산 업체의 경우 기존 원료 공급 농가들이 사과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는 원료용 매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인근 지역의 원료 농산물 확보가 어려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료 확보를 위한 광역단위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

2.1.2. 경영 실무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주들은 업체 경영을 위한 실무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주 대부분이 농민이나 귀농·귀촌인이기 때문임. 즉, 사전에 사업체 경영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나 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주들은 사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경영 실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경영 실무로는 세무, 회계, 노무 등이 해당되는데, 초기에는 주변에 발품을 팔아가면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음.

○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무 등의 전문 분야는 전문 업체에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세금 환급 혜택이 있는 의제매입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2.1.3. 물류(handling) 효율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생산한 가공식품들을 운송 단위로 포장하는 과정과 가공식품을 저장고로 이동하거나 배송 트럭에 상차(loading)하는 핸들링(handling)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낮아 업체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특별한 설비나 장치 없이 단순 수작업으로 포장 또는 핸들링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인건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생산된 상품을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서나 배송 트럭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경영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관련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업체들은 지게차 등의 설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대투자 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핸드 파레트 트럭(대당 20~ 30만 원)이나 상하차용 롤러컨베이어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업체 홍보를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에 세부 내용으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그림 4-3. 파레트 랩핑기와 핸드 지게차

2.1.4. 공장 가동률

○ 산지에서 생산된 원료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연중 생산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공장 가동률이 높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업체의 사업 규모와 사용 원료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낮은 공장 가동률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를 포함한 산지 농산물 가공업체의 구조적인 한계로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 낮은 공장 가동률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게 됨.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가공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나, 시장 확대의 한계와 상품 개발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소수의 상품군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가공 상품의 다양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

2.2. 마케팅 제약 요인

2.2.1. 판로 개척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초기에 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 직거래와 전용 매장 판매 등의 B2C 거래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마트나 식재료 업체 등에 B2B 거래로 판로를 확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자체적인 판로 확대 능력이 거의 없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나 축제 행사장 부스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한 단골 고객 확보에 집중함.

- 대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도심지 직거래 장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상당한 기대감과 성과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불만도 다수 제기 중

그림 4-4. 지역 축제 판매장

○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직거래를 시도하는 업체들도 있으나, 효과적인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업체에 주는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음.

○ 지역 기관이 명절 선물용 등으로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판로 개척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관 선물용 상품은 한과류 등 전통식품이 주로 해당
- 대표적으로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은 6차 산업화(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등)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상품 판매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

2.2.2. 시장 경쟁

○ 일부 품목의 경우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장 진입이 지나치게 많아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레드 오션(red ocean)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로 산지 가공이 용이하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처리가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급격하게 격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배추 수급조절의 대안으로 농협 등이 절임배추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기존 소규모 절임류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특성상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진입 장벽(entry barrier)이 낮아,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타 업체들이 쉽게 따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의 가공상품은 단순 가공품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제조 공정상의 노하우(know-how)가 필요 없는 실정

○ 또한, 업체들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상품의 판매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서로 판매영역이 겹쳐지는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끼리 과도한 시장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전국 단위의 품목별 대표 조직을 설립하여 자체적인 시장 관리 등을 하는 방안 검토 가능

2.2.3. 거래 교섭력(bargaining power)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을 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직거래 등을 통한 B2C 거래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대량 거래를 하는 B2B 거래로 판매 방

식을 변화시키게 됨. 이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교섭력 격차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하게 됨.

-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례로는 거래 대금 감액, 행사 상품 요구, 부당한 클레임 제기 등이 해당

○ 자본 및 시스템에서 절대적인 열위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거래 교섭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할 수단이 거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실효가 없는 상황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실제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불공정 행위를 감수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 해당 행위들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실정

제 5 장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1.1.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 우리나라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사업 경력이 길지 않고, 규모가 작아 일반 식품가공산업에 비해 산업 구조나 업체 경쟁력이 열위에 놓여있는 특성을 가짐.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식품가공산업과는 달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야여 함.

○ 보다 실질적인 단계별 산업 육성을 위해 로드맵(road-map)을 제안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음. 먼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및 스타 업체(star enterprise) 발굴 단계에서

는 창업 또는 신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정립하고, 법적·제도적 현장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며, 스타 업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대표 성공 업체들을 만들어내도록 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업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단계에서는 기 발굴된 스타 업체를 동종 업계가 벤치마킹(bench-marking)하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품목별 대표 조직을 육성하며, 지연 단위 R&BD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함.

○ 마지막 단계인 2020년 이후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강소산업 진입 단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강소 업체를 육성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고, 명품 수출의 낙수효과 (落水效果)를 농업을 포함한 연관산업으로 확산시키도록 함.

그림 5-1.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로드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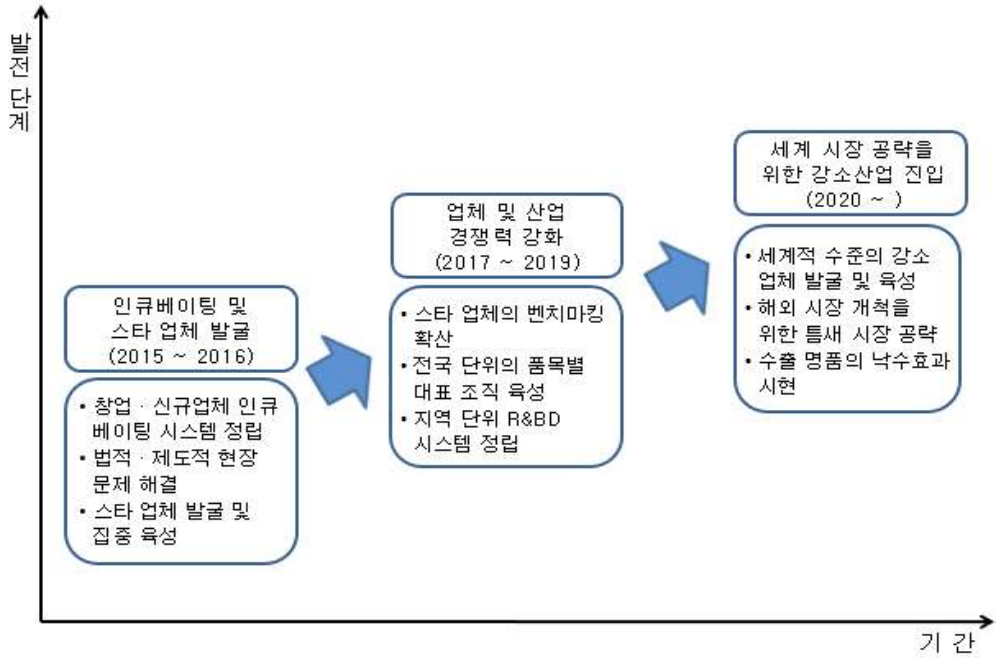

1.2. 법적・제도적 현장 문제 개선

○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법적・제도적 현장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주요 현장 문제로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농지법상의 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의 규제가 대표적임.

○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규제들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1.3. 업체의 경영・마케팅 경쟁력 강화

○ 전문 역량이 부족한 경영자들이 대부분인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들의 경영 또는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대부분의 업체 경영주들이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으로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

○ 또한, 산지에서 소규모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식품업체들의 특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시장 개척 능력이 턱없이 미흡하기에 초기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함.

그림 5-2.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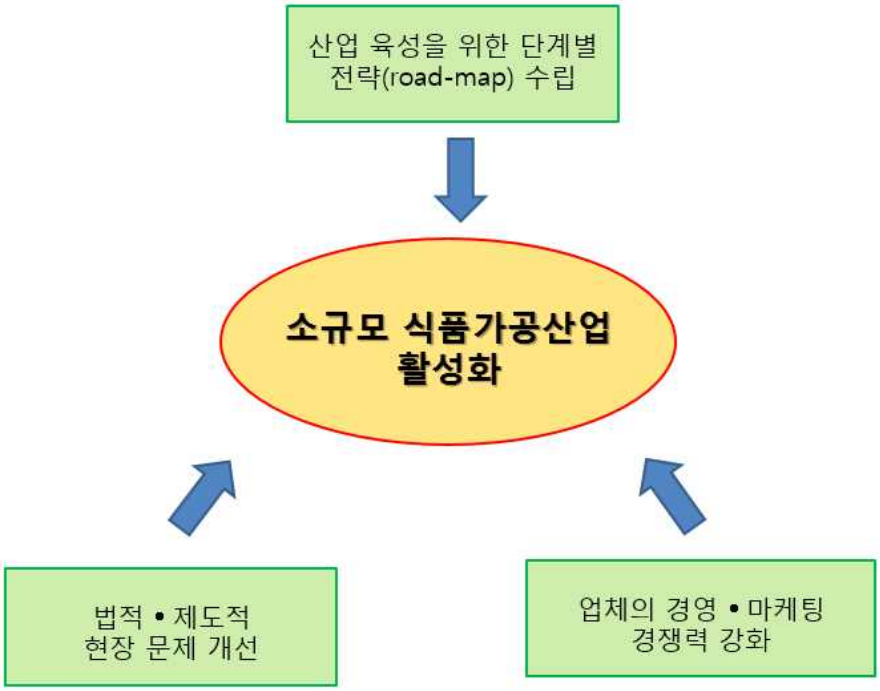

2. 부문별 세부 전략

2.1. 법적 · 제도적 활성화 방안

2.1.1.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식품 제조 · 가공 시설 기준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는 원·부재료를 전량 구매하여 대량으로 매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한시적 또는 소규모로 생산일수가 많지 않는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제조시설에는 매출액이나 수익에 비해 투자해야할 비용이 과다할 수 있어 형편에 맞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동 별표의 자. 시설시준 적용의 특례에는 선박, 위탁생산, 함께 쓰는 작업장에 관한 예외규정과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1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조례로 시행 중인 무주군, 남양주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따라 지도와 단속 중임.

○ 이미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기준을 정하여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가공함에 있어 적은 투자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협의 등의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었던 중 이번 연구에서 시설기준의 안을 제안하고자 함.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적용가능한 시설기준을 제정하고자 실제 운영중인 농업인 가공시설 실태조사와 식품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시설기준(안)을 마련하였음

- 적용되는 작업장이 주로 농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작업장인 점을 감안하면서도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진이 1차 시안을 작성
- 1차 시안을 내용을 유관 부처, 지자체 담당자 및 식품위생전문가 등에 지면검토를 요청하여 의견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담당 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인이 많은 지자체(2개 : 남양주시, 무주군)의 식품위생 부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식품관련 지도사, 한국식품기술사회, 식품전문컨설팅사(2개사 : 한국식품정보원, 푸드원텍평가원), 관련 대학 교수, 농업인 단체(2개 단체 : 한농연, 한여농) 등

- 지면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시설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 검토, 조정

* FGI의 참석자는 상기 지면 검토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술사회, 농업인단체, 컨설팅사, 대학교에서 시설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10인

- 검토를 위해 참고한 주요 지자체의 자체 조례안과 HACCP 선행요건은 각각 부록 3과 4를 참고

○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제조장 건축물 부지(위치)

제약조건 완화하는 대신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를 명시

-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장(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식품 제조와 관련되는 원료, 부원료, 제품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완화
- 제조장 마감재 등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재질이 아닌 것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의 별도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
- 급수시설의 예외조항 신설: 식수용 물탱크로 대체 가능
-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확보하면 시설 기준 삭제
-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은 준수하면서 제조자의 관리로 안전이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

표 5-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안) 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안)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 한 시 아니 합 축 면 을 제 온 로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시 식품(원료농산물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식 에 적 한 농 을 외 한 로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장은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 구분 하도록 한다.	소 물 아 적 때 원 을 야 등 비 정 될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공정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라) 제 를 따 이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충분 자연 나, 설치 성이 제품 환기 에는 로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농 장 폐 지 대 * 물 레 수 리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는 식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 한 제 하 기 능 용 표 전 석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일>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1) 2) 로 탱 하 제 경 개 생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취 수의 관련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2) 내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대 공 고 록 * 저 별 능

사. 검사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 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 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항에 따른다.	대 조 관 를 다 하 을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

○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 기준(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표 5-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안)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안)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시 식품(원료농산물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 구분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공정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는 식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일>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항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1.2. 기타 규제 개선

가. 관련 이슈

○ 그 동안 농어촌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업 영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폐수 관련 규제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규제였음. 이 가운데 폐수 관련 규제는,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존 0.1㎥에서 20㎥로 크게 완화하고, 폐수가 공공 혹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폐수 관련 규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된 규제임.

○ 농가가 특정 지역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혹은 지구가 표시되어 있음. 어떤 토지든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 혹은 지구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이 다름. 또한, 「건축법」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사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도지역(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와 (2) 사업부지가 포함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7]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록 5를 참고할 것.

○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용도지역에 묶여 건축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

- 따라서 농가가 원하는 장소에 농산물 가공시설 혹은 제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할 필요성 제기 (부록 7 참조)

나. 규제 완화 방안 (부록 7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조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이나 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계획조례를 확산시킴으로써 농업인 가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

○ 둘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 3조의 4)에 새로운 목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 제1항에 따른 각 지역별로 건축가능한 시설에 각호의 별표에 새로운 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 제6호에 따른 소뮤모의 작업(제조)장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목"을 신설하여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방안

○ 셋째,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을 농업의 일부분으로 확대하

여 가공장을 농가 부속건물로서 식품제조업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가.단독주택에 부속건물(66㎡ 미만)의 용도에 “소규모농산물가공장”으로 등록가능 하도록 내용 추가

2.2. 경영・마케팅 활성화 방안

2.2.1.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incubating program) 도입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함.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소규모 식품가공식품의 식품 안전성 수준 하락 방지와 경영 실무 취득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미국 등의 선진국은 농가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여 성과 시현 중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식품 제조 공정이나 위생 관련 실무 사항(위생 기준 위반 및 표시 위반 사례 등 포함), 경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마케팅, 회계, 세법, 근로관계법 등), 우수 업체 견학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
- 교육과 함께 식품가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도 다수 제기

- 특히, 강의 일정과 업무 시간이 중복되어 자주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되어야하는데, 예비 창업자나 신규 사업 운영자들이 실제 사업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때까지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임. 구체적으로는 멘토(mentor)-멘티(mente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나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멘토 풀(pool)을 구성한 다음,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멘티를 선정하여 다년간 멘토-멘티로 연계
- 특히, 동종 업계 일반 식품 대기업을 R&BD 멘토로 위촉하여 제품 개발, 공정 개선, 식품위생 관련 설비 개선, 판매망 확대 등에 기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유도[8]

2.2.2. 현장 애로 사항 해결 창구 도입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장 애로 사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9]나 6차산업포털(www.6차산업.com) 등을 참고하여 산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 산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전용 센터는 업체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함.

- 구체적으로 식품위생이나 표시 관련 민원 발생 시 업체를 대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고 처리

---

8 구체적인 사례는 부록 8을 참고할 것.
9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9을 참고할 것.

- 변동된 위생 및 표시 기준 등의 사항을 스마트 폰 등으로 공지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 시설, 포장 등 현장 지원 요청 사항을 수집하여 관련 정책 건의
- 상품 판매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상 분쟁 중재

○ 원스톱 센터 조직은 중앙에서 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하여 애로 사항 등을 청취·수집한 다음,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가공센터, 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산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전국 단위 대표 조직을 구축할 경우, 관련 업무를 해당 조직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2.2.3. 6차 산업과 연계한 판매 시장 개척

○ 판매 시장 개척 능력이 미흡한 산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판매 시장 개척이 가능한데,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등 전용 판매 행사 개최, 로컬 푸드 직매장이나 꾸러미 사업 활용 등이 가능함. 먼저,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등 전용 판매 행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선호하는 판매 촉진 정책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나, 내실화를 꾀할 필요도 있음.

- 지방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대도시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실제 장터에 팔리는 물건들이 산지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서 상인에 의해 판매되는 사례를 다수 지적
- 또한, 기초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축제나 장터는 해당 지자체 관내 생산품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지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창출을 위해 여러 시·군이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지자체가 개설하는 박람회의 판매 부스에 농가 소규모 업체는 규모 작아

서 사업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이들 소규모 업체들만 따로 모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

○ 로컬푸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의 경우 틈새시장(niche market) 개척을 위한 안테나 샵(antenna shop)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또한, 3차 서비스업 등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

2.2.4. 조직화를 통한 R&BD 네트워크 구축

○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임. 조직화를 통해 B2B 거래 시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교섭력 격차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고, 과도한 시장 경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공동의 목적을 위한 R&BD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B2C 거래에서 B2B 거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때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강요에 취약한 구조
-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시장 경쟁 제한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

○ 특히,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R&BD 여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조직화를 통한 공동 R&BD 사업 추진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 조직화를 위한 방법은 우선 지역 단위로 동종 업체들의 연합체를 구성한 다음, 전국 단위로 대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다 빠른 조직화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업체들의

민간 주도 조직화가 진행되어야만 함.

2.2.5. 안정적인 원료 확보 지원

○ 국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특성 상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큼. 특히, 원료 농산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구매할 때 소요되는 자금 문제, 원료 농산물을 재배하는 인근 지역 농가의 점진적 감소 문제, 수입 원료의 안정적 구매 문제 등이 대표적임.

○ 원료 농산물의 단기 구매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인근 지역을 포함한 원료 농산물 구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국산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확보한 농산물을 장기간동안 안정된 품질로 가공할 수 있는 저장 공간(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 지원은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기 저리 융자 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가능
- 국산 원료 공급 네트워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10]의 기능을 강화하여 적용 가능
- 과일, 채소 등 신선도가 단시간에 하락하는 원료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공장 가동률 제고와 원료 품질 향상 등을 도모

10 aT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우리나라 식재료의 원활한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 1월에 개소한 이후, B2B 및 B2C 식재료 전자상거래, 학교급식 전자조달, 친환경 농수산물 거래 등을 실시하여 2012년에 거래 규모 1조 원을 돌파하였음.

부록 1.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 정의의 세부 기준

■ 지역 및 위치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집단취락 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경영 주체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정의에 나타난 경영주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 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료 농수산물의 범위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 혹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국산 농수산물이 무엇인가라는 점과 국산 농산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때 주원료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내산 농산물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산 농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식품 제조과정에서 각종 부재료(소금, 설탕 등)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 농산물로서 지역(시·군) 내 생산한 농산물 90% 이상 사용될 때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식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단, 국내 또는 지역 내 생산이 없는 원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설의 범위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가운데 농업용 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⑤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농업용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식품제조농가에서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설비와 장치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매출액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농업활동의 연장선에서 인정하여 농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를 구매하여 연중 생산·판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시설의 규모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를 66㎡(20평) 이내로 정의한 것은 식

품 제조 관련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용 시설로 구분되면 66㎡까지는 신축이나 증축 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세법」 – 농민주

3.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가. 건물
(1) 면적 (가) 국실 6㎡ 이상(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담금실 10㎡ 이상(밑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최소규모)
(다) 증류실 8㎡ 이상(발효주류 제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2. 생활 기반 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주류제조장의 경우 농민주 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면적을 최소 24㎡ 이상이면 제조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한

정하여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사업장과의 구별을 둘 수 있다.

■ 종업원 채용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식품업이므로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도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품제조농가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제조농가는 1인 기업형태를 띄고 있으며 가족 노동력을 주로 하는 가족회사(기업)이다. 생산하는 제품은 연중 판매가 가능하나 원료의 투입 시기나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 연중 15일 이내로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부록 2.

맥도웰 팜스 살사(McDowell Farms Salsa) 사례

○ 맥도웰 팜스 살사는 평범한 농가가 가정 전통 레서피를 지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차 식품가공산업으로 진출한 사례이다. 자매인 벨린다(Belinda Faye)와 칼라(Carla McDowell)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을 운영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소스의 하나인 살사소스[11]를 맛있게 제조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살사 제조 비법을 재현한 그들은 주변의 상품화 제안을 받았으나, 줄곧 거절해오다가 켄터키 주정부의 가내 식품가공(Homebased Processing and Microprocessing) 육성 프로그램인 “Kentucky House Bill 391″의 지원을 받아 맥도웰 팜스 살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 벨린다와 칼라는 먼저 어머니의 살사 제조 기법을 재현하여 살사의 맛 등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살사의 원료를 가족 농장인 맥도웰 팜에서 직접 재배하여 조달하였다. 또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원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살사 소스가 가정 전통방식(Homemade)으로 직접 손으로 제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살사 소스 주 소비자인 주부와 유사한 여성인 점을 십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위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한 쌍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11 살사소스는 멕시코 전통 음식인 나쵸 등을 찍어먹는 소스로 우리나라의 고추장과 유사한 개념의 소스 양념식품임.

그림 1. 농장 전경 및 살사 제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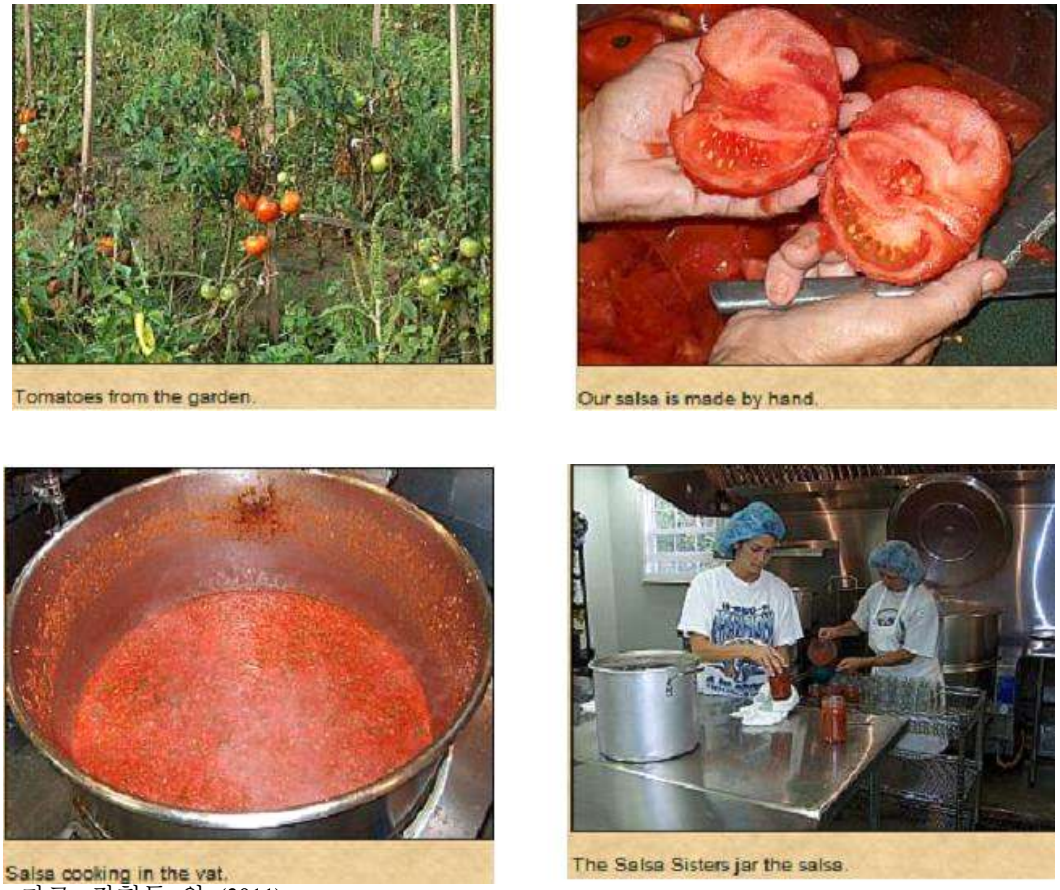

자료: 장현동 외 (2011)

○ 벨린다와 칼라는 살사소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켄터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가내 식품가공업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품개발부터 사업체 설립까지 다양한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았다. 켄터키 주정부는 “Kentucky House Bill 391”에 근거하여 켄터키 대학(the University of Kentucky)에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가내 식품가공 육성 프로그램(Home-based Microprocessor Workshop)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각종 노하우를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가내 식품가공 인증(Home-based Microprocessor Certification)을 받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살사 제품도 다양화하였는데, 순한 맛(Mild), 중간 맛(Medium), 매운 맛(Hot), 아주 매운 맛(Very Hot)의 4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4가지 맛에 대한 설명도 여성 특유의 재치를 덧붙였는데, 순한 맛의 경우 “무서워하지 않고 살사 맛을 시험해보기 위한 맛”으로 표현하고 아주 매운 맛은 “장갑과 보호 안경(Goggles)을 끼고 제조한 살사”로 표현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림 2. 살사 상품

자료: 장현동 외 (2011)

○ 살사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식품 소매점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인터넷 직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제품별로 게시한 다음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바로 주문과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 식품 소매점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살사 소스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들(켄터키와 오하이오 주의 53개 식품점)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여 소비자들이 인근에 있는 식품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살사 구매 홈페이지

자료: 장현동 외 (2011)

○ 이후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Kentucky House Bill 391”의 지원 대상 상한선인 연매출 $35,000을 초과하게 되자,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벨린다와 칼라는 켄터키 농업 개발 위원회(Kentucky's Agricultural Development Board)에서 $56,000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매 네트워크(Wholesale distribute network)를 구축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기존의 살사 제품 외에 젤리 상품도 개발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고추(pepper)나 할라피뇨(Jalapeno)를 기반으로 한 매운 맛 젤리를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 젤리 상품의 마케팅을 위해서 젤리를 활용한 레서피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4. 딸기-할라피뇨 젤리 후식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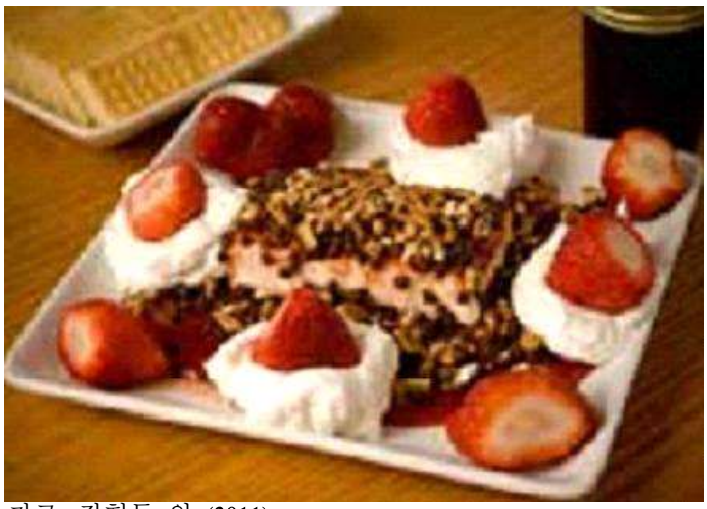

자료: 장현동 외 (2011)

부록 3.

지자체 자체 조례안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1. 무주군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검사실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 실시. 다만, 자체검사 가능한 경우 제외

2. 남양주시

○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할 것
-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자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재료 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부록 4.

소규모 HACCP 선행 요건

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 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HACCP 의무적용 7대 기본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의무적용 8대 추가 품목 : 과자 및 캔디류, 빵 및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부록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1.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

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14.]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1.14., 일부개정]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시행일:2014.7.15.] 제71조 제1항 제6호, 제71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8호,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71조 제1항 제13호, 제71조 제1항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 조례에 위임된 사항

제78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고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1.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⑤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식품제조·가공 관련 내용이 없음)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너목이 없어 제조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4.3.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7. 공장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塗裝)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능여부**(식품제조시설 등록에 반드시 필요)

용도지역	농촌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설치 여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		X
제2종 전용주거지역		X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녹지 지역	o	X
생산녹지 지역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자연녹지 지역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관리 지역	o	너목 ×, 공장
계획관리 지역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농림지역	o	X, 농업진흥지역(농지법)은 가능
자연환경 지역	o	X
자연취락 지구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관리지역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준공업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일반공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전용공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유통상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또는 공장
근린상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일반상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심상업 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준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별표 2] <개정 2014.3.2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13.6.1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12.4.10>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

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금융업소 ·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12.4.10>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 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12.4.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14.3.2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원(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14.3.24>

<u>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14.3.24>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14.3.24>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군 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14.3.24>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개정 2014.3.24>

<u>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군 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

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부록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시

○ 사업지구가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창고시설은 건축할 수 있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너”목에 해당되는 시설은 건축 가능
-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의 설치에 관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식품공장 설치가 불가
-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창고 등 제조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가 불가

그림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시 1)

○ 사업지구의 해당 토지가 “생산관리지역”

-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너”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창고”도 건축할 수 없음. 따라서 아래의 사업지구에서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19]의 “자”목을 통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가능

그림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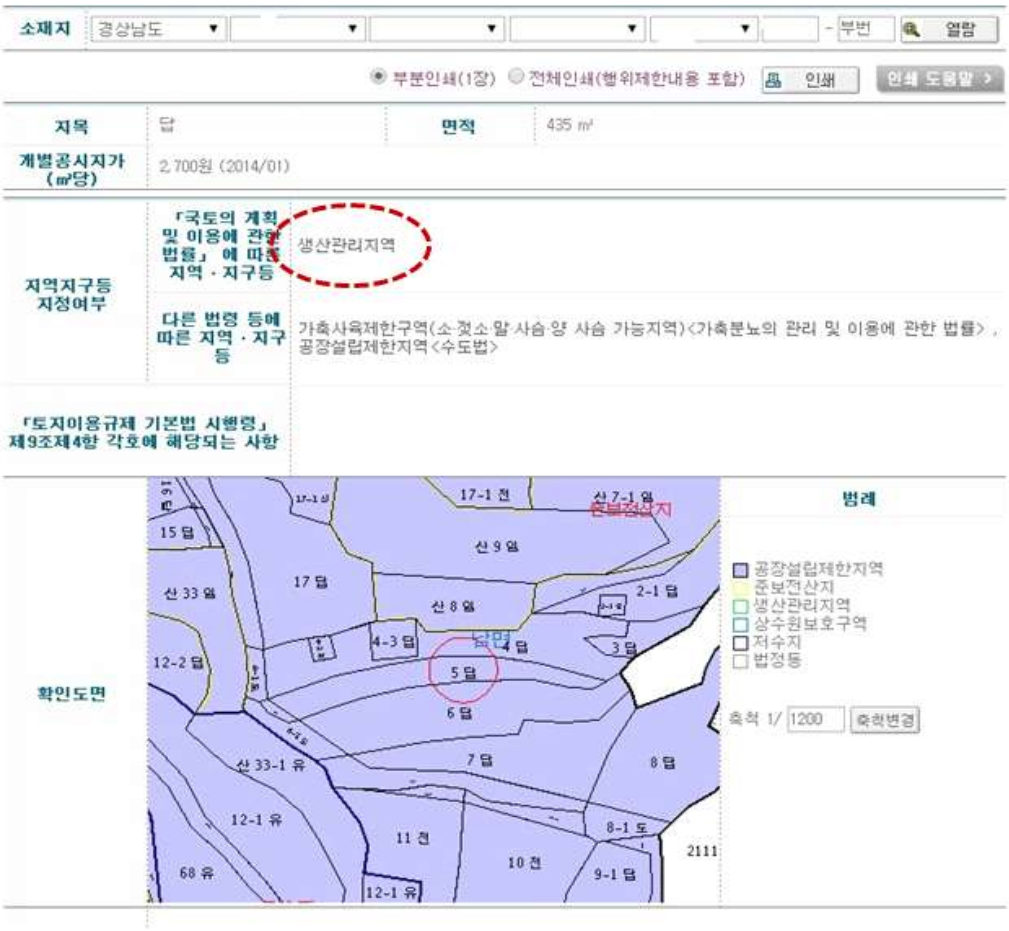

○ 사업 대상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

- 이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너”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에 농산물을 직접 사용한 식품공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식품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공장 설립 가능

그림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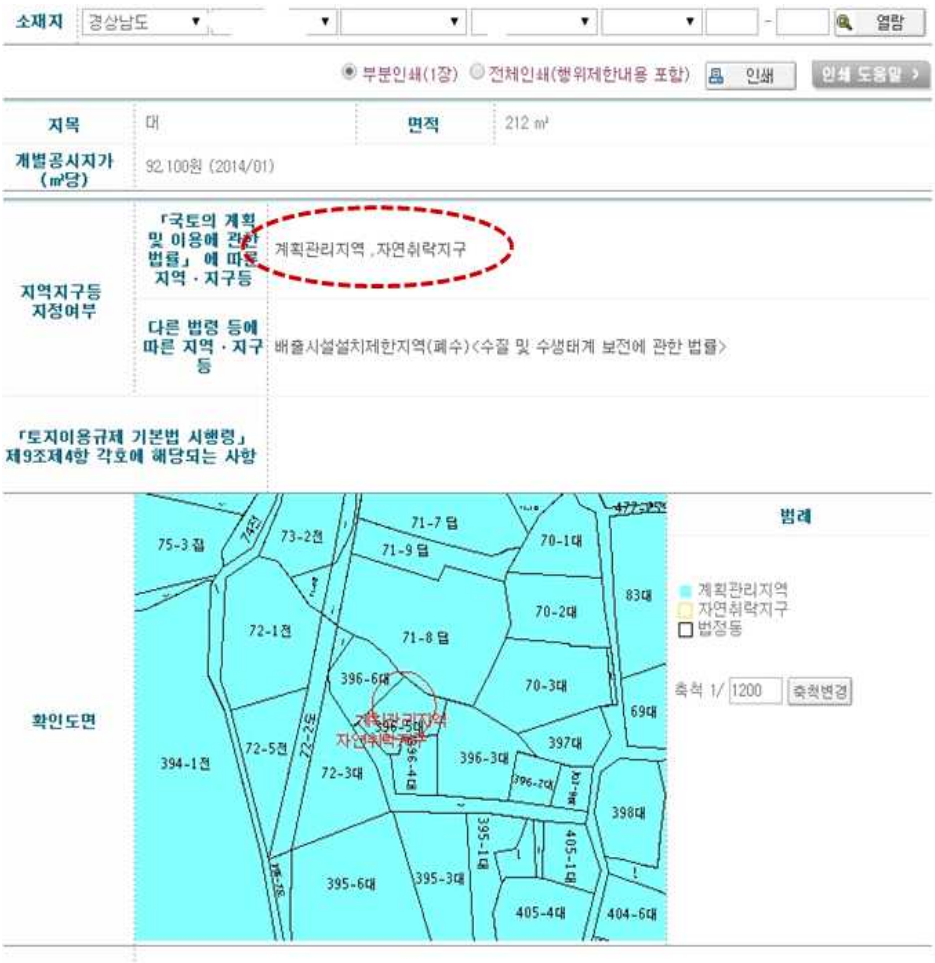

부록 7

국토법 및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

1.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는 경우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개발행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일부 위임)하고 있음.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 제7호[준주거지역], 제8호[중심상업지역], 제9호[일반상업지역], 제10호[근린상업지역], 제13호[일반공업지역], 제19호[생산관리지역]에 해당, 이 중에 제19호[생산관리지역]은 제2종 근린시설 "너"목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 제외 되어 있음

2.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해당 지역(지구)에서 "식품제조용" 건축물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의 "제조장"이 건축,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 할 수 있음.

- 단순히 "너"목을 완화할 경우, 농산물 가공 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제조장으로서 건물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식품"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전제조건을 설정

○ 이 경우, 정부는 조례로 위의 내용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마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례 개정 가이드를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경우

○ 건축제한 용도지역별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

-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별표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서 건축제한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아 농산물가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별표 15], 생산관리지역[별표 19], 계획관리지역[별표 20], 농림지역[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별표 22] 주요 5개 용도지역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여 농산물을 생산한 농지의 인근에서 농산물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새로운 “목”을 신설하는 방안

- 국토부와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너”목 “제조장”과 별도의 “소규모농산물가공장” 신설

「건축법 시행령」 수정 전	「건축법 시행령」 수정 후
■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소규모농산물가공장: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각각에 해당하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

- 다만, 이 경우에는 소규모 농사물가공의 범위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편법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신규“목”으로 허용하는 기준과 범위
1. 농촌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조치로 주소지의 “읍, 면” 지역으로 제한
2. 신청자(법인)의 주소 등록지 동일 지번에 한정
3. 무허가 시설의 철거 및 건축물 등록 (건폐율 조정을 위한 분할 및 병합)
4. “소규모”의 취지에 맞게 제조 작업장의 면적을 66㎡(20평) 제한
5. 제조장외 용도변경 불가능(제2종 근린시설의 다른 용도)
6. 식품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한정하여 직접생산 또는 지역(시·군) 내 수매하여 사용 (국내에서 생산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원료 또는 첨가물량은 제외, 예: 설탕)

3. 제조장을 농가 부속건물로 인정하는 경우

○ 66㎡ 이하의 농가부속건물은 건축 관련 법령[건축법, 농지법]에서 건축을 허용, 농가의 부속건물로서 제조장의 용도로 등록된다면 국토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 농가(농·어업인 주택)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없이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 가능할 수 있음.

- 농가 부속건물에서 소규모농산물가공장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 중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크게 완화

○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농지법에 관련된 다른 법령에 아래 조항을 삽입하여 근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취지에 따라 농업인은 농가 부속건물에서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소규모 농산물가공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령에 반영하기 힘들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에 소규모 농산물 제조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농·어업인이 부속건물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장 포함)

○ 다만, 이 경우에는 농가 부속건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단독주택이 주거가 목적인 건물이지만 6차산업 활성화 등 시대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가에서는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부속건물의 용도 및 건축 목적이 추가 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또는 집합건축물에서도 도·소매업 신고 가능하여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주택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농산물 가공장으로 활용가능해지면 판매 목적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로 등록함으로서 인허가에서 용도에 따른 규제가 완화 될 수 있음.

부록 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링 사례

1. 풀무원 - ㈜참프레

○ 풀무원은 2014년 3월부터 10개월간 ㈜참프레와 멘토-멘티 협약을 통해 축산가공 유통 산업 분야의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경영, 개별 컨설팅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할 계획임.

그림 8. 풀무원-(주)참프레의 멘토링 지원 협약식

자료: 이뉴스투데이(www.enewstoday.co.kr)

○ 풀무원은 멘토로서 멘티 기업인 ㈜참프레를 위해 개별 진단 및 컨설팅,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임직원 대상 CCM 인식제고, 기술협력지원, 경영

상 불편사항 해결방법 전달, 소비자 불만 해결 방법 등을 전달함.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른 마음경영을 실천하며 글로벌 식품 회사로 거듭나게 된 풀무원의 핵심 경영 가치도 함께 전수할 예정임.

○ 풀무원은 2013년부터 협력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PSCA(Pulmuone Supply Chain Academy)'을 개설해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품질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수준이 우수한 협력기업을 선정하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2. CJ그룹

○ CJ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 개척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역특색 제품 및 특산물을 발굴해 유통을 책임지고 중소 협력업체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기업 활동과 연관된 구성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역의 중소 식품기업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의 유망한 중소 식품기업들이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CJ제일제당은 기술지원, 품질관리, 유통대행,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책임짐으로서 중소기업은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CJ제일제당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음.

○ CJ오쇼핑은 ‘CJ IMC’라는 자회사를 두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무대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양질의 제품을 진출시키고, CJ오쇼핑의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 CJ IMC의 성공사례로는 인도, 베트남, 일본, 터키에서의 ‘홈파워 빨래건조대’, 베트남에서의 ‘도깨비 방망이’ 등

부록 9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개요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식품기업과 외식기업의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1월 개설하여 창업상담과 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상담과 진단을 통해 정보·교육·수출·자금 등의 지원과 연계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코칭과 심층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식품 및 외식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상담반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 및 외식 기업들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그림 9.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식품·외식기업 상담
  : 식품제조·외식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애로사항 상담
- 심층컨설팅
  : 식품·외식기업 종합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해외한식당 전문 컨설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외식 기업 및 해외 한식당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 현장코칭
  : 전문가 방문을 통한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해결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비용 지원
- 식품 및 수출정보제공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는 중소 식품 제조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위생, 품질, 브랜드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식품제조기업 직무능력 향상코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위생, 품질관리 및 식품위생법의 이해(법규, 표시기준, 관련법규) 등, 포장재 개발을 통한 브랜드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관내 식품제조기업 및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의
- 강의와 병행하여 HACCP 및 전통식품분야 전문자문위원 1:1인 현장컨설팅 동시 진행

○ 이외에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실을 개설하여 경영, 마케팅, 수출 분야, 식품안전, 위생, 제조·가공 등 기술 분야, 한식 및

외식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aT지원 자금, 수출,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담에서 외부전문가와 연계된 상담까지 폭넓은 상담지원을 제공함.

그림 10.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

참고 문헌

김성훈 외. 2013. 충남 6차 산업화 정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4.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류충호 외. 2009.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박승용, 성방욱. 2007. 전통식품의 소규모 산지가공 활성화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장현동 외. 2011. 농업과 2·3차 산업융합 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정은미. 2010.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외. 2007.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태동 외. 2008. 농촌지역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체 경영진단.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